

숲으로의초대 숲에 on

KOREA FOREST SERVICE

Healthy Forest
Rich Mountains
Happy People

# 등산지원기본계획

2007~2017







www. foa.go.kr

산림청
KOREA FOREST SERVICE

숲으로의초대 숲에 on



Healthy Forest
Rich Mountains
Happy People

# 등산지원기본계획

2007~2017







www. foa.go.kr

산림청
KOREA FOREST SERVICE



# Contents




## 1 계획수립 개요

1. 계획의 수립배경 및 성격 05
2. 용어의 정의 06
3. 계획의 주요내용 07

## 2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

1. 등산 · 산악레포츠 현황 11
2. 장래 여건변화와 수요전망 17
3. 정책적 시사점 23

## 3 목표 및 추진방향

1. 비전과 목표 27
2. 목표별 추진방향 29

## 4 세부추진계획

1. 등산지원체계 구축 33
2. 등산자원 조사 및 관리 39
3. 쾌적한 등산환경 조성 42
4. 산악레포츠 시설 확충 47
5. 등산서비스 확대 50
6. 등산지원 기반구축 54

## 5 투자계획

1. 투자계획 총괄 61
2. 세부 투자계획 63

## 6 부 록

1. “흔적을 남기지 마세요” 실행원칙 67
2. 전국 등산로 현황 69
3. 산림문화 · 휴양에 관한 법률 70



# 제1장

# 계획수립 개요

1. 계획의 수립배경 및 성격 05  2. 용어의 정의 06  3. 계획의 주요내용 07

## 1 계획의 수립배경 및 성격

### 1) 계획수립의 배경

○ 주 5일 근무제, 웰빙문화 등의 확산으로 등산은 가장 대중적인 산림휴양활동으로 자리잡고 있으나 등산이나 등산로에 대한 관리 부실로 양질의 등산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

○ 국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문화 · 휴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「산림문화 · 휴양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됨에 따라 체계적인 등산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필요

○ 또한, 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한 등산 · 산악레포츠 시설의 양적 확충과 함께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 · 산악레포츠 환경의 조성, 산림휴양자원의 체계적인 보전 및 이용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추진 방향의 정립 및 장기적 사업계획 수립 필요

### 2) 계획의 범위

○ 시간적 범위 : 2007년 ~ 2017년

※ 10년단위 계획이나 최초계획은 제5차 산림기본계획 기간에 맞추어 11년 계획으로 수립

○ 공간적 범위

- 등산로, 탐방로, 숲길 등 산림내에서 이루어지는 여가 · 휴양활동을 위한 선형의 시설
- 등산 및 산악레포츠 관련 활동 및 서비스

### 3) 계획의 성격

○ 「산림문화 · 휴양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산림문화 · 휴양기본계획의 등산 부문 계획

○ 「산림문화 · 휴양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매 10년마다 수립하는 국가 단위 "등산기본계획"

○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산림청이 수립하는 "등산로관리계획"을 포함한 등산 · 산악레포츠 관련 계획의 수립 지침

○ 「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백두대간 등산로 조성 · 정비 세부계획

## 2 용어의 정의

○ 등산 : 산림과 산림주변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휴양 및 여가활동
– 산책, 탐방, 하이킹, 백패킹, 트레킹, 등산, 암릉 및 암벽등반, 등정, 산악레포츠 등

| 등산관련 개념 |

| 구 분 | 개 념 |
|---|---|
| 트레킹 (Trekking) | • 목적지가 없는 도보여행 또는 산 · 들로 떠나는 사색여행<br>– 전문 산악인들이 개발한 네팔의 히말라야 등 험한 산악길이 일반에게 공개되면서 트레킹이라는 용어로 정착<br>• 남아프리카 원주민들이 달구지를 타고 정처없이 집단 이주한 데서 유래<br>• 등반과 하이킹의 중간형태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장거리 야영여행을 하는 백패킹(back packing)과 구별<br>– 하루 도보거리는 15~20km이며, 산의 높이를 기준으로 5,000m 이상은 등반, 그 이하는 트레킹으로 구분하기도 함 |
| 하이킹 (Hiking) | • 심신의 단련과 수양을 목적으로 해변이나 산야로 도보여행(walking)을 하는 일<br>– 산책, 나들이, 가벼운 등산 등의 야외활동을 널리 하이킹이라 함<br>• 유럽에서는 18세기경부터 하이킹과 워킹이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었으나, 19세기 후반부터는 워킹레이스가 성행해짐으로써 두 개의 낱말은 별개의 뜻으로 정착 |
| 백패킹 (back packing) | • 백패킹은 '짊어지고 나른다' 라는 뜻으로, 1박 이상의 야영생활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정해진 구간을 여행하는 것<br>• 등산과 트레킹의 묘미가 복합된 레저 스포츠로 산의 정상까지 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발길 닫는 대로 걷는다는 점에서는 트레킹과 유사하지만, 주로 계곡이나 냇가를 끼고 발걸음을 옮긴다는 점에서 트레킹과 구별<br>• 영국에서는 하이킹(hiking), 독일에서는 반데룽(Wanderung)이라는 말로 쓰임 |

○ 등산로 : 산림과 그 주변에 위치하면서 인간, 동물 또는 교통수단의 통행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선형의 통로

– 탐방로, 자연관찰로, 산책로, 숲길, 임도 등 휴양 및 여가활동에 사용되는 산림과 산림 주변에 위치한 길

– 등산로의 접근 및 연결성 확보에 필요한 마을길, 농로, 도로

○ 산악레포츠 : 산림을 기반으로 행해지는 다양한 여가 · 스포츠 활동

– 산악자전거, 산악마라톤, 산악승마, 패러글라이딩, 행글라이딩, 오리엔티어링, 오토캠핑, 산악스키 등

## 3 계획의 주요내용

○ 등산현황, 장래 여건변화 및 수요전망

○ 등산기본계획의 목표

○ 등산정책 부문별 추진계획

| 부 문 | 추 진 계 획 | |
|---|---|---|
| 등산지원체계 구축 | • 등산로 유형분류 및 등급지정<br>• 국가 및 지방등산로 지정 | • 지역특색 숲길 개발 |
| 등산자원 조사 및 관리 | • 등산 자원조사<br>• 등산로 기본도 제작 | • 등산 · 산악정보 DB 구축<br>• 등산로 및 산악레포츠 시설 관리기준 제정 |
| 쾌적한 등산 및 산악레포츠 환경 조성 | ■쾌적한 등산환경 조성<br>• 훼손 등산로의 정비<br>• 등산로 안내 및 편의시설 설치<br>• 등산로의 체험기능 강화 | • 등산로 휴식년제 시행<br>■산악레포츠 시설 확충<br>• 임도활용 산악레포츠 코스 개발<br>• 산악레포츠 시설 확대 |
| 등산 서비스 확대 | • 등산안내센터 설치 · 운영<br>• 산악기상예보 및 영상정보 서비스 실시 | • 등산교육 확대<br>• 등산객 안전관리 강화 |
| 등산지원 기반구축 | • 산악정보시스템 구축 · 운영<br>• 산악 · 등산관련 컨텐츠 개발 및 전달 체계 구축<br>• 등산문화캠페인 전개 | • 산악관련 단체와의 파트너쉽 구축<br>• 국립등산지원센터 설립<br>• 국제협력 확대 |

○ 투자계획(2007~2017년)

| 구 분 | 항 목 | 계 | 2007년 | 제5차 기본계획기간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| | 전반기 | 후반기 |
| 합 계 | 소 계 | 239,007 | 10,789 | 133,202 | 95,016 |
| 등산로 실태조사 | 소 계 | 11,830 | 6,382 | 4,670 | 778 |
| | 국 비 | 8,280 | 4,467 | 3,269 | 545 |
| | 지방비 | 3,550 | 1,915 | 1,401 | 234 |
| 등산지도 제작 | 소 계 | 1,572 | - | 832 | 740 |
| | 국 비 | 1,572 | - | 832 | 740 |
| | 지방비 | - | - | - | - |
| 등산로 정비 | 소 계 | 131,086 | 3,632 | 84,054 | 43,400 |
| | 국 비 | 74,006 | 2,024 | 50,902 | 21,080 |
| | 지방비 | 57,080 | 1,608 | 33,152 | 22,320 |
| 등산로 모니터링 | 소 계 | 12,362 | - | 6,181 | 6,181 |
| | 국 비 | 10,357 | - | 5,179 | 5,179 |
| | 지방비 | 2,005 | - | 1,002 | 1,002 |
| 등산안내센터 설치 및 운영 | 소 계 | 24,199 | 200 | 9,600 | 14,400 |
| | 국 비 | 16,999 | 200 | 6,720 | 10,080 |
| | 지방비 | 7,200 | - | 2,880 | 4,320 |
| 등산교육 | 소 계 | 4,448 | 200 | 1,666 | 2,582 |
| | 국 비 | 3,174 | 200 | 1,166 | 1,808 |
| | 지방비 | 1,274 | - | 500 | 775 |
| 산악레포츠시설 확충 | 소 계 | 46,405 | - | 22,845 | 23,560 |
| | 국 비 | 34,255 | - | 16,770 | 17,485 |
| | 지방비 | 12,150 | - | 6,075 | 6,075 |
| 산악구조대 운영 | 소 계 | 2,000 | - | 1,000 | 1,000 |
| | 국 비 | 2,000 | - | 1,000 | 1,000 |
| | 지방비 | - | - | - | - |
| 산악정보 전달체계 구축 및 운영 | 소 계 | 2,850 | 300 | 1,500 | 1,050 |
| | 국 비 | 2,850 | 300 | 1,500 | 1,050 |
| | 지방비 | - | - | - | - |
| 등산문화개선 | 소 계 | 2,255 | 75 | 855 | 1,325 |
| | 국 비 | 1,925 | 75 | 729 | 1,121 |
| | 지방비 | 330 | - | 126 | 204 |

※ 2007년~2011년 등산로 정비사업은 「백두대간 국가숲길」조성계획 포함



# 제2장

#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

1. 등산 · 산악레포츠 현황 *10*  2. 장래 여건변화와 수요전망 *17*  3. 정책적 시사점 *23*

# 1 등산 · 산악레포츠 현황

## 1) 등산 현황

### (1) 등산인구 및 활동특성

○ 우리나라 18세 이상 성인 5명중 4명이 연간 1회 이상 등산에 참여하고 있으며, 연인원 462백만명이 등산활동에 참여(한국갤럽조사, 2006)

| 등산인구 현황 |

(단위 : 천명)

| 등산빈도 | 참여 인구비율 | 해당 인구 | 연인원 |
|---|---|---|---|
| 합 계 | 100.0% | 37,617 | 462,042 |
| 주 1 회 | 16.4% | 6,163 | 320,480 |
| 월 1 회 | 23.3% | 8,756 | 105,073 |
| 분기 1 회 | 13.0% | 4,923 | 19,692 |
| 연간 1 회 | 29.8% | 11,199 | 16,798 |
| 가지 않음 | 17.5% | 6,576 | - |

자료 : 한국갤럽(2006)

○ 최근 10년간 생활체육 종목중 참여율 순위가 1~2위로 가장 인기 있는 취미활동으로 정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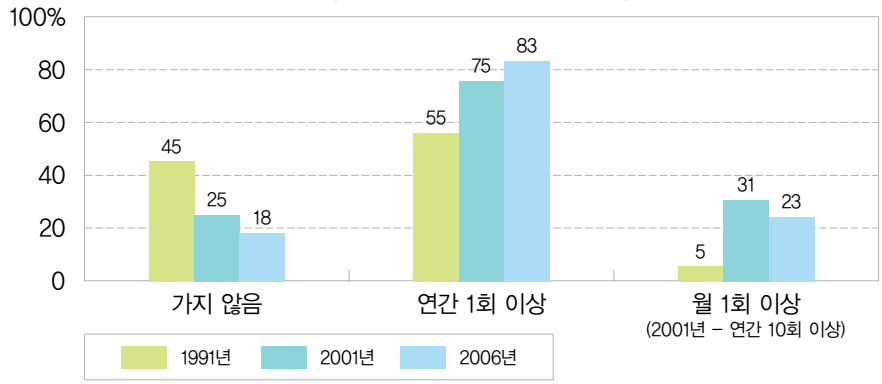
| 생활체육 종목중 등산참여율 순위 |

| 연 도 | 1986 | 1989 | 1994 | 1997 | 2000 | 2003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1위 | 육상/조깅 | 체조/줄넘기 | 육상/조깅 | 등산 | 등산 | 육상/조깅/속보 |
| 2위 | 축구 | 축구 | 체조/줄넘기 | 농구 | 체조/줄넘기 | 등산 |
| 3위 | 체조/줄넘기 | 육상/조깅 | 등산 | 체조/줄넘기 | 농구 | 보디빌딩(헬스) |
| 4위 | 등산 | 등산 | 볼링 | 배드민턴 | 축구 | 체조/줄넘기 |
| 5위 | 테니스 | 농구 | 농구 | 수영 | 보디빌딩(헬스) | 수영 |

자료 : 문화관광부 2005 체육백서

○ 여가시간 증가 및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등산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
– 연간 1회 이상 등산인구 비율 : ('91) 55% → ('01) 75% → ('06) 82%

| 등산빈도별 등산인구 추이 |




자료 :「산림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보고서」(1991, 2001, 2006 산림청)

○ 등산인구중 노년 및 여성층의 비율이 증가하고 등산 목적도 다양해짐
– 경제적 · 시간적 여유가 있는 중 · 노년층 및 여성층 등산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

| 연령별 휴일 등산비율 |

| 연 령 | 20대 | 30대 | 40대 | 50대 | 60대 이상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비 율 | 38% | 45% | 68% | 85% | 63% |

자료 : 월간마운틴 2006년 10월호

○ 등산 목적이 산 정상에 오르는 등정(登頂) 중심에서 건강을 위한 산보나 자연체험으로 다양화됨

| 등산형태 |

| 등산유형 | 1일 워킹 | 2일이상 워킹 | 집근처 야산 | 암벽등반 | 암릉등반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비 율 | 36% | 13% | 24% | 18% | 9% |

자료 : 월간마운틴 2006년 10월호

○ 지역산악회 등 모집산악회가 주관하는 단체산행 활성화
– 전국에 1,128개의 모집산악회가 활동중인 것으로 추정됨(생명의숲, 2005)
– 연간 산행 모집횟수는 평균 38.9회, 평균 참여인원은 62명으로 모집산악회를 통해 연인원 1,496만명이 산행에 참여(생명의숲, 2005)

### (2) 등산로 현황

○ 우리나라에는 1,735개 산에 4,290개 노선과 약 17,598km의 등산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됨

- 지방산림청에는 225개 노선 1,521km의 등산로가 있으나 적극적인 등산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
-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등산로는 3,796개 노선, 14,921km로 등산로의 대부분을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음
- 20개 육상 국립공원에는 269개 노선과 1,156km의 탐방로(등산로)가 있으며, 자연공원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음

○ 등산로의 과도한 이용과 관리 부실로 등산로의 훼손이 심화되고 등산로 주변 산림지역의 식생파괴 가중

- 전체 등산로의 약 28%인 4,894km는 등산로 바닥이 침식되거나 위험하여 정비가 시급한 실정임
-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국립공원이나 대도시 근교의 일부 등산로를 제외하고는, 대부분의 등산로가 관리부실로 훼손되고 있음

| 등산로 현황 |

(단위 : 개, km)

| 관리주체 | 산 | 노 선 | 연장거리 | 정비대상 |
|---|---|---|---|---|
| 합 계 | 1,735 | 4,290 | 17,598 | 4,894 |
| 지방자치단체 | 1,580 | 3,796 | 14,921 | 4,716 |
| 지방산림청 | 140 | 225 | 1,521 | 178 |
| 국립공원 | 15 | 269 | 1,156 | - |

자료 : 산림청(2006년 기준)

○ 산림경영시설로서 총 15,825km(ha당 2.47m)의 임도가 시설되어 있으나 등산, 산악레포츠 등 산림휴양용으로는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

| 임도시설 현황 |

(단위 : km)

| 구 분 | 합 계 | 국유임도 | 민유임도 | ha당 밀도(m) |
|---|---|---|---|---|
| 임도거리 | 15,825 | 4,027 | 11,798 | 2.47 |

자료 : 산림청(2005년 기준)

## 2) 산악레포츠 현황

### (1) 산악레포츠 인구 및 활동특성

○ 국내에서 활동중인 주요 산악레포츠로는 산악자전거, 산악마라톤 등 6개 종목이 있으며, 종목별 활동인구는 종목 인지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약 1만명~6만명 정도로 추정됨

– 대표적 종목인 산악자전거나 산악마라톤의 경우 자전거, 마라톤 동호인의 상당수가 해당 종목의 동호인으로 추정됨

| 산악레포츠 동호인 현황 |

| 종 목 | 국민생활체육협의회 | | 추정 동호인 (천명) | 주요시설 | 비 고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클럽수 | 회원(명) | | | |
| 산악자전거 | 17 | 1,113 | 60 | 임도 약 500㎞ | 자전거동호인 약 400만명 |
| 산악마라톤 | 파악안됨 | 파악안됨 | 파악안됨 | 임도 약500㎞ | 마라톤동호인 약 400만명 |
| 오리엔티어링 | 16 | 176 | 10 | 30여개소 | |
| 행 · 패러글라이딩 | 667 | 14,399 | 60 | 활공장 168개 | 소 |
| 암벽등반 | 11 | 200 | 40 | 인공암벽장 152개소 | 실내 72 실외 80 |
| 서바이벌 게임 | 3 | 111 | 파악안됨 | 약 90여개소 | |

자료 : 문화관광부 2005 체육백서, 산림청 내부자료

○ 참여 · 모험형 관광의 활성화로 산악레포츠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매년 새로운 유형의 산악레포츠 활동이 등장

– 산악자전거, 행 · 패러글라이딩, 오리엔티어링, 산악승마, 서바이벌게임 등 기존 산악레포츠 인구가 꾸준히 증가

– 마운틴보드, 산악용 4륜 바이크(ATV), 지오캐싱(geocaching) 등이 새로운 산악레포츠 종목이 지속적으로 출현

※ 마운틴보드 : 네 개의 바퀴가 달린 보드 위에 몸을 싣고 산비탈을 내려오는 레포츠로 스노보드와는 달리 주로 눈이 오지 않는 계절에 이용

※ 지오캐싱 : geo(지오)와 cache(은닉물)의 합성어로 숨겨놓은 보물을 GPS로 찾는 신종 레포츠

### (2) 시설현황

○ 전국적으로 총 15,825km의 임도가 있으나, 이중 약 500km의 임도만이 산악자전거와 산악마라톤용으로 이용되고 있음
- 임도관리주체 또는 이용단체에서 관련 대회시에만 시설관리가 이루지고 있음

○ 국유림에 설치한「산악레포츠의 숲」은 현재 18개소(9,843ha)에 이르나 예산지원이 없고 경직된 운영방식으로 6개소만 이용되고 있는 실정임

○ 전국의 활공장은 총 168개소에 이르나 법적 근거 빈약하고 지자체별로 관광시설 또는 관광관련 특구사업 등으로 조성되어 무분별한 이용에 따른 산림피해 발생

○ 전국적으로 90여개의 서바이벌게임장이 있으나 주로 수련원, 연수원 등에서 직접 설치한 것으로 대부분 영리목적으로 운영중임

## 3) 등산관련 법률 및 제도 현황

### (1)「산림문화 · 휴양에 관한 법률」

○ 체계적으로 등산로를 조성, 보전 · 관리를 위해 등산로관리청별로 등산로 실태조사 실시 및 관리계획 수립
- 산림청장, 지방자치단체장 등 등산로관리청별로 매 10년마다 등산로 실태 조사
- 등산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등산로관리청별로 등산로 관리계획 수립

○ 등산로 휴식년제 및 등산로 매수제도 도입
- 등산로의 보호와 등산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훼손이 심한 등산로는 등산로의 전부 또는 일부 구간를 지정하여 일정 기간동안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
- 등산로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산로나 그 주변지역의 토지, 입목 등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수할 수 있도록 함

○ 등산학교 운영 및 등산안내인 교육프로그램 인증제도 실시
- 건전한 등산문화의 정립 및 확산을 위하여 등산교육을 실시하는 등산학교를 개설 운영

– 등산안내인 교육프로그램 인증제도를 실시하여 자격을 갖춘 등산안내인을 육성

○ 조난 등산객의 신속한 구조를 위한 산악구조대 설치 · 운영
– 등산객이 조난 · 실종 및 추락 등의 사고를 당할 경우에 대비하여 산림항공관리본부에 산악구조대를 편성
– 119구조대와 협조하여 조난자를 신속히 구조할 수 있는 체계 구축

### (2) 「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」및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

❑ **「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」**

○ 백두대간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매 10년 마다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의 수립
– 환경부장관은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의 원칙과 기준을 정함
– 산림청장은 원칙과 기준에 따라 2006년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을 수립

❑ **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**

○ 등산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정비
– 전국 등산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10년 단위의 '등산로 관리계획' 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조성 · 관리
• 백두대간등산로, 역사 · 문화유적지 연결 등산로부터 단계적으로 정비
– 노면정비, 훼손지 복원 및 편의시설 설치 등을 종합 정비하되 인위적인 시설은 최소화하고 대피소 등 필요시설은 주변 경관과 조화되게 설치
– 등산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등산로 및 그 주변지역의 토지매수 추진

○ 등산객의 안전관리 강화 및 건전한 등산문화 확산
– 산림보호와 등산객의 안전관리를 위해 '등산로 휴식년제' 및 '산악구조대' 운영
– 인적자원 양성방안을 마련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서비스 제공

○ 백두대간 등산로를 '국가탐방로' 로 지정하여 국토탐방기능 확보
– 백두대간 능선 등 주요 등산로를 '국가탐방로' (백두대간 숲길)로 지정 · 관리하고 전국 등산로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토 탐방기능을 확보
• 백두대간과 정맥, 역사 · 문화가 있는 등산로(대관령, 문경새재 등) 및 공원구역 내의 기존 탐방로를 연결

– 공원시설계획 등과 연계하여 단기 · 중기 · 종주형 등 다양한 탐방코스 개발 및 철쭉, 단풍, 억새, 동굴산행 등 다양한 테마산행과 연계

## 2 장래 여건변화와 수요전망

### 1) 사회 · 경제지표 전망

○ 인구

– 등산인구의 모집단이 되는 전체 인구는 출산율 저하로 약 5천만명을 정점으로 감소추세로 전환될 전망(인구증가율 : '00년 0.71% → '23년 0%)

– 평균 수명연장 등으로 65세 이상의 노년층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에는 전체 인구의 15.7%로 증가 예상

| 인구 전망 |

| 구 분 | 2005년 | 2010년 | 2020년 | 증가배수 |
|---|---|---|---|---|
| 인구수(천명) | 48,294 | 49,220 | 49,956 | 1.03 |
| 노인인구 비율(%) | 9.3 | 10.9 | 15.7 | 1.79 |

자료 : 통계청

○ 국내총생산(GDP)

– 2008년경이면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진입하고 2020년경에는 3만7천불로서 현재의 일본, 프랑스 수준을 상회할 전망

※ 1인당 GDP : 스위스 50천달러, 미국 42, 일본 36, 프랑스 34

| 국내총생산 전망 |

| 구 분 | 2005년 | 2010년 | 2020년 | 증가배수 |
|---|---|---|---|---|
| GDP(10억$) | 788 | 1,122 | 1,824 | 2.31 |
| 1인당 GDP(천달러) | 16 | 23 | 37 | 2.31 |

자료 : 비전2030, 2006년 기획예산처(2005년 불변가격 기준)

○ 여가시간

– 주5일 근무제 확대에 따라 주당 여가시간은 45~48시간에 이를 전망

| 주간 생활시간 변화 전망 |

| 구 분 | 1997년 | 2010년 | 2020년 | 비 고 |
|---|---|---|---|---|
| 생활필수시간 | 74.1 | 75.5 | 76.0 | 수면, 식사 |
| 노동시간 | 46.7 | 41.3 | 38.0 | |
| 자유시간 | 40.9 | 45.2 | 47.8 | 관광, 여가 |

자료 : 통계청

## 2) 등산 · 산악레포츠 수요 전망

### (1) 등산수요 전망

❑ **주 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여가시간 증가와 건강에 대한 관심증대로 등산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전망임**

○ 2007년까지 연간 51백만명의 국민관광수요 추가 증가(한국관광연구원 2001)

– 주말 · 공휴일 증가 : 67일 → 116일 (연월차 포함시 140여일)

– 국내관광총수요량 전망 : ('02) 315 → ('07) 437백만명

※ 일본의 경우 주5일 근무제 시행('87년) 후 국내 관광 · 휴양수요가 초기 6년간 약 15%, 이후 약 10% 증가

○ 증가하는 관광 · 휴양수요의 상당부분이 산림으로 집중될 전망

– 주 5일 근무제 도입시 여가활동 희망장소로 숲 · 계곡을 가장 선호

• 숲 · 계곡 53.1%(국립산림과학원 2003)

• 숲 · 계곡 56.1%, 바다 · 해변 36%, 기타 8%(한국갤럽조사 2001)

– 산림휴양 수요는 향후 10년간 5~6%의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

• 1990년부터 2003년까지 연평균 5.8% 성장(지역컨텐츠연구소 미발표)

• 연평균 5% 성장하여 총수요가 2013년 174백만명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 (산림청 2006)

– 주 5일 근무제 실시 후 새로 시작한 여가활동으로 등산이 3위를 차지

• 영화보기 17.9%, 여행 16.7, 등산 14.3, 헬스 9.5, 산책 7.1 등(2006 국민여가조사)

– 산림을 기초로 하는 생태관광 활동 증가

• 2002년 생태관광참여자 107천명 추정, 매년 4%씩 증가 예상

### ❑ 노년 · 여성층의 등산 참여가 늘어나고 활동유형이 보행활동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등산수요가 다양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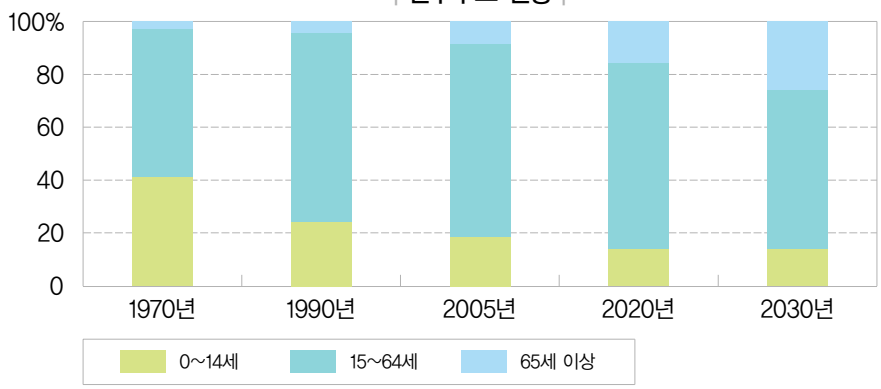
○ 인구의 노령화와 여성의 권한 신장으로 노년 및 여성 등산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안전하고 편리한 등산환경에 대한 요구 증대

– '00년 이미 고령화 사회(노인인구비율 7%)에 진입하였으며, '26년 초고령화 사회(노인인구비율 20%)로 진입할 전망(희망한국보고서 2006)

–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: ('05) 50.1 → ('10) 55 → ('20) 60% (희망한국보고서 2006)

– 여성권한척도(UNDP, 80개국) : ('05) 59 → ('10) 45 → ('20) 30위 (희망한국보고서 2006)

| 인구구조 전망 |




자료 : 통계청, 2005

○ 등산활동유형이 고산 등정, 암벽등반 등 산악활동 중심에서 능선종주, 근교 산림탐방 등 보행활동 중심으로 변화

– 등산객의 95%가 워킹 위주의 가벼운 산행에 참여(한국리서치, 2003)

– 산림휴양활동 참여자의 93%가 등산, 피크닉, 자연풍경감상에 참여(국립산림과학원, 2003)

– 산림휴양활동 가운데 등산 · 트레킹, 산책 · 산림욕 등 보행위주 활동이 65%를 차지

| 우리나라 산림휴양활동 참여현황 |

(단위 : 천원)

| 활 동 | 등산 · 트레킹 | 산책 · 산림욕 | 약수터 이용 | 물놀이 | 기 타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응답수 | 400 | 371 | 240 | 60 | 121 |
| 비율(%) | 33.6 | 31.1 | 20.1 | 5.0 | 10.2 |

자료 : 지역컨텐츠연구소, 2004 (미발표)

### (2) 산악레포츠 수요 전망

○ 산악레포츠에 대한 관심 증가로 산악레포츠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

– 산악레포츠 인구전망 : ('91) 10 → ('01) 90 → ('07) 210만명

※ 서울시민의 산림휴양활동 유형조사(2001 임업연구원) 결과 산악자전거, 암벽등반 등 산악레포츠가 새로운 유형으로 나타남

– 소득증가와 여가시간의 증가, 동적 여가활동 추구,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 증가로 산악레포츠 수요의 지속적 증가 예상

| 1인당 연간 레저비용 |

(단위 : 천원)

| 연 도 | 2002년 | 2004년 | 2006년 | 2008년 | 2010년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비 용 | 1,142 | 1,227 | 1,312 | 1,406 | 1,508 |

자료 : 레저백과, 2004

○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모험 · 체험형 산악레포츠 유형 및 활동 증가

– 자동차의 대중화와 여가시간의 증가로 가족단위로 직접 체험하면서 즐기는 체재형 산악레포츠참여가 일반화

– 서바이벌 게임, 마운틴보드, 모터보드, 산악용 4륜바이크(ATV), 지오캐싱 등 새로운 모험형 산악레포츠가 지속적으로 출현

| 참여 희망 레포츠 |

| 연 도 | 계(%) | 자전거(MTB포함) | 행 · 패러글라이딩 | 암벽타기 |
|---|---|---|---|---|
| 2000년 | 2.4 | 1.7 | 0.7 | |
| 2003년 | 2.9 | 1.1 | 1.5 | 0.3 |

자료 : 2000, 2003년 국민생활체육참여 실태조사

## 3) 등산 · 산악레포츠 여건변화 전망

❑ **등산수요의 증가로 등산로 및 주변 산림의 훼손가능성이 높아지는 반면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증가할 것임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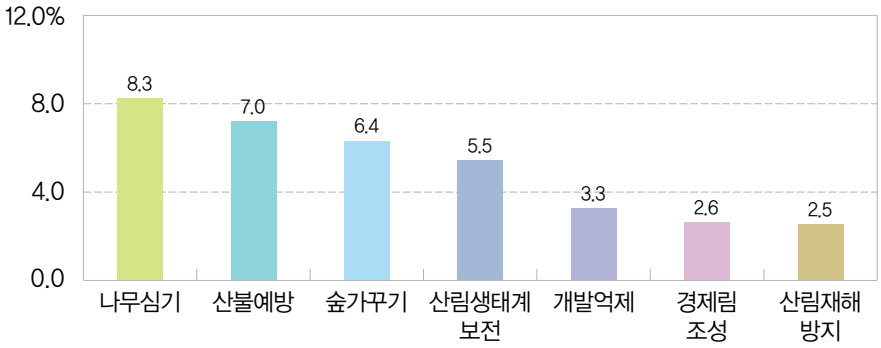
○ 늘어나는 등산객으로 인해 등산로 훼손 및 주변 산림의 피해 증가 우려

– 일부 등산로의 이용집중으로 인한 등산로 노면 침식 및 샛길 등산로 발생

– 산불발생 증가, 야생동식물 서식지 파괴, 계곡 오염 등 훼손 증가

○ 등산로 특성을 고려치 않은 무분별한 등산로 정비로 인한 산림훼손 가능성 상존
  – 지나친 편의시설 설치 등 시설 중심의 등산로 정비시 산림훼손 우려
  – 백두대간, 도시생활권 등 등산로 유형에 따른 정비지침 제정 필요
○ 시민단체, 일반국민의 산림훼손에 대한 감시역할이 강화될 것임
  – 자연친화적인 등산로 정비시 생태계의 건전성 확보가 중요

| 향후 10년내 산림 발전을 위해 산림청이 해야 할 일 |




자료 : 산림청 2006, 「산림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보고서」

### ❑ 국민 누구나 등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등산환경의 쾌적성, 안전성 및 편의성이 강조될 것임

○ 자연체험 및 학습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편의시설 요구
  – 자연학습을 위한 해설판, 안내판 등의 시설설치 확대
○ 노인이나 여성 등 노약자가 안전하게 등산할 수 있는 환경 요구
  – 바닥침식 등 훼손구간, 급경사 구간 등 보행불편 지역에 대한 개선 필요
○ 산행중 발행하는 안전사고도 증가에 따라 신속한 구조체계 확립 필요
  – 산악사고 구조실적이 다른 주요 사고유형에 비해 2배 이상 증가(2005년 기준)

| 주요 사고유형별 구조실적 |

(단위 : 명)

| 연 도 | 교통사고 | 승강기 | 실내갇힘 | 산악사고 |
|---|---|---|---|---|
| 2005년 | 18,975 | 12,850 | 8,642 | 4,722 |
| 2004년 | 18,870 | 12,078 | 9,471 | 3,889 |
| 증감(%) | 0.56 | 6.39 | 9.6 | 21.4 |

자료 : 소방방재청, 2005

### ❑ 이용빈도가 높은 도시근교 생활권 등산로에 대한 정비 요구가 커질 것임

○ 도시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권 등산로의 중요성 증대
  –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에 95%에 이를 전망
  – 도시림이 전체 산림면적의 38%(2,424천ha)를 점유

○ 도시 서민층을 배려한 복지차원에서도 매우 중요
- 여가시간 증가에 비해 소득이 따라 주지 못하는 서민층 수요 충족
- 여가활동 증가에 따른 교통체증 심화 현상에 대처

| 도시화율 전망 |

(단위 : 천명)

| 연 도 | 단 위 | 2003년 | 2020년 |
|---|---|---|---|
| 도시인구 | 천명 | 42,586 | 47,458 |
| 도시화율 | % | 89 | 95 |

자료 : 정보통신부, 2006

### ❑ 산림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건전한 등산 및 산행문화 정립 요구 증대

○ 등산이용으로 인한 산림훼손 방지를 위해 자연친화적인 산행문화의 보급
- 금지지역내 취사, 음주, 고성방가 등 산행질서 훼손행위 근절

○ 산악단체, 환경단체,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지속적인 의견수렴 필요
- 국유림관리소, 지자체,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등산관리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

### ❑ 등산 및 산악관련 정보의 개발 및 효율적인 정보전달체계의 필요성 증대

○ 초고속 인터넷망이 발달한 우리나라는 인터넷(컴퓨터)을 통해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의 필요성 증대

|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 수 |

(단위 : 천명)

| 연 도 | 2001년 | 2002년 | 2003년 | 2004년 | 2005년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총 가입자 | 7,806 | 10,405 | 11,178 | 11,921 | 12,191 |

자료 : 정보통신부, 2006

○ 등산로 현황, 산악기상, 산행지식 등 등산관련 다양한 컨텐츠 개발 필요
- GIS, GPS 등 정보기술의 발달로 등산정보의 전달 범위 확대

○ 방송, 인터넷, DMB, VOD 등 다매체시대에 맞는 정보전달체계 구축 필요

| 운동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경로 |

| 경 로 | 컴퓨터 | T V | 친 구 | 신 문 | 기 타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비율(%) | 37.2 | 21.4 | 20.8 | 7.4 | 20.6 |

자료 : 2003년 국민생활체육참여 실태조사

## 3 정책적 시사점

### ❑ 정확한 등산로 현황 및 이용실태 정보 파악 시급

○ 산지도 등 등산로 현황 정보가 없어 체계적 관리가 어려움

– 주요 명산을 중심으로 등산지도가 제작되어 활용되고 있으나 정확도가 떨어지고, 많은 등산로가 누락되어 등산지도의 신뢰성이 부족함

– 봄 · 가을철 등 등산성수기를 중심으로 많이 알려진 일부 산과 등산로에 이용이 집중되어 등산로 훼손 심화

○ 체계적인 등산관리를 위해 등산유형별 등산실태 조사 필요

– 대간, 정맥 산줄기의 종주 등산, 생활권 등산 등 등산유형별 이용실태파악 필요

### ❑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환경 조성을 위한 등산로 정비 시급

○ 등산관련 인프라가 등산로에 한정되어 있고, 기존 등산로도 노면침식 등으로 훼손되어 이용 만족도 저하

– 국립공원, 대도시 근교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등산로가 예산부족 등으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

– 노인 및 여성 등산객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 필요

○ 등산로 훼손은 이용만족도 저하 및 산림생태계의 악화 초래

– 등산로 훼손이 가중되면서 훼손유형이 노면침식, 노폭확대, 식생파괴 등으로 다양화

### ❑ 등산로의 지속적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관리체계 확립 필요

○ 대간, 정맥 등 주요 산줄기의 등산로가 시 · 도 또는 시 · 군간 경계를 이루고 있어 관리주체가 모호

– 등산로도 국도, 지방도 등 도로와 같이 국가, 지지체 등 지원주체별로 관리범위에 대한 명확한 구분 필요

– 국가적으로 중요한 등산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대간, 정맥 등 주요 산줄기 등산로의 지원체계 확립 필요

○ 등산로 관리주체에 따라 관리 기준이 상이하여 등산객들의 혼란 야기

– 백두대간 종주등산 등 지방청, 지자체, 국립공원관리공단간 이견 사항에 대한 체계적 기준 정립 필요

❑ **등산안내, 등산교육 등 다양한 등산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 강화 필요**

○ 등산안내센터, 등산안내인 등 등산안내 서비스가 없어 전문 산행지식이 없는 일반인의 참여가 제한

– 전문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일반인은 모집산악회를 통해 산행에 참여하므로써 등산로 이용집중 문제 발생(생명의숲, 2005)

○ 등산교육 프로그램이 획일적이고, 교육기회도 크게 부족

– 등산교육 프로그램이 고산(高山) 등정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산악인 위주로 편성

– 등산교육인원도 연간 1천여명 수준에 불과( '06년 교육계획 1,185명)

○ 등산지원기관의 전문인력 부족

– 지자체, 국유림관리소, 국립산림과학원 등의 산림부서의 등산관련 전문인력과 등산로 관리기관의 행정인력이 크게 부족

❑ **산악자전거 등 새롭게 정착되고 있는 산악레포츠활동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책 강구**

○ 새로운 산악레포츠 활동에 대한 현황 파악이 미흡

– 산악자전거, 패러글라이딩, 오리엔티어링, 산악승마, 서바이벌 게임 등

○ 임도시설을 휴양목적으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

– 임도를 조림, 숲가꾸기, 산불방지 등 임업적 용도로만 활용

○ 산악레포츠 시설에 대한 조성기준의 미비로 산림훼손 등 피해 발생

– 일부 동호회가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등을 임의로 조성하여 산림훼손 야기

❑ **등산 · 산악관련 컨텐츠 개발 및 효율적인 정보전달체계 구축 필요**

○ 「숲에 On」산악정보코너를 중심으로 산악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오류가 많아 활용성이 떨어짐

– 산악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공공 사이트가 부족하고 자료의 주기적 갱신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

○ 등산정보의 다양성 부족 및 등산객의 의견교류 통로 부족

– 등산관련 정보가 100대 명산을 중심으로 산의 위치, 고도, 등산코스 소개 등 간략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어 정보양이 절대적으로 부족

– 등산객 상호간 정보를 교류하고 정책적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간 부족



# 제3장

# 목표 및 추진방향

1. 비전과 목표 27  2. 목표별 추진방향 29

## 1 비전과 목표

### ❑ 비전 :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즐거움을 경험하는 등산 · 산악레포츠

○ 국민 모두가 가보고 싶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등산 · 산악레포츠 환경 실현

○ 미래세대를 위해 등산 · 산악레포츠 자원의 지속성을 유지 · 증진

### ❑ 목표

○ 전국 주요 산줄기의 등산로를 연결하는 체계화된 등산로 네트워크 구축

○ 쾌적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등산로 및 산악레포츠 환경 정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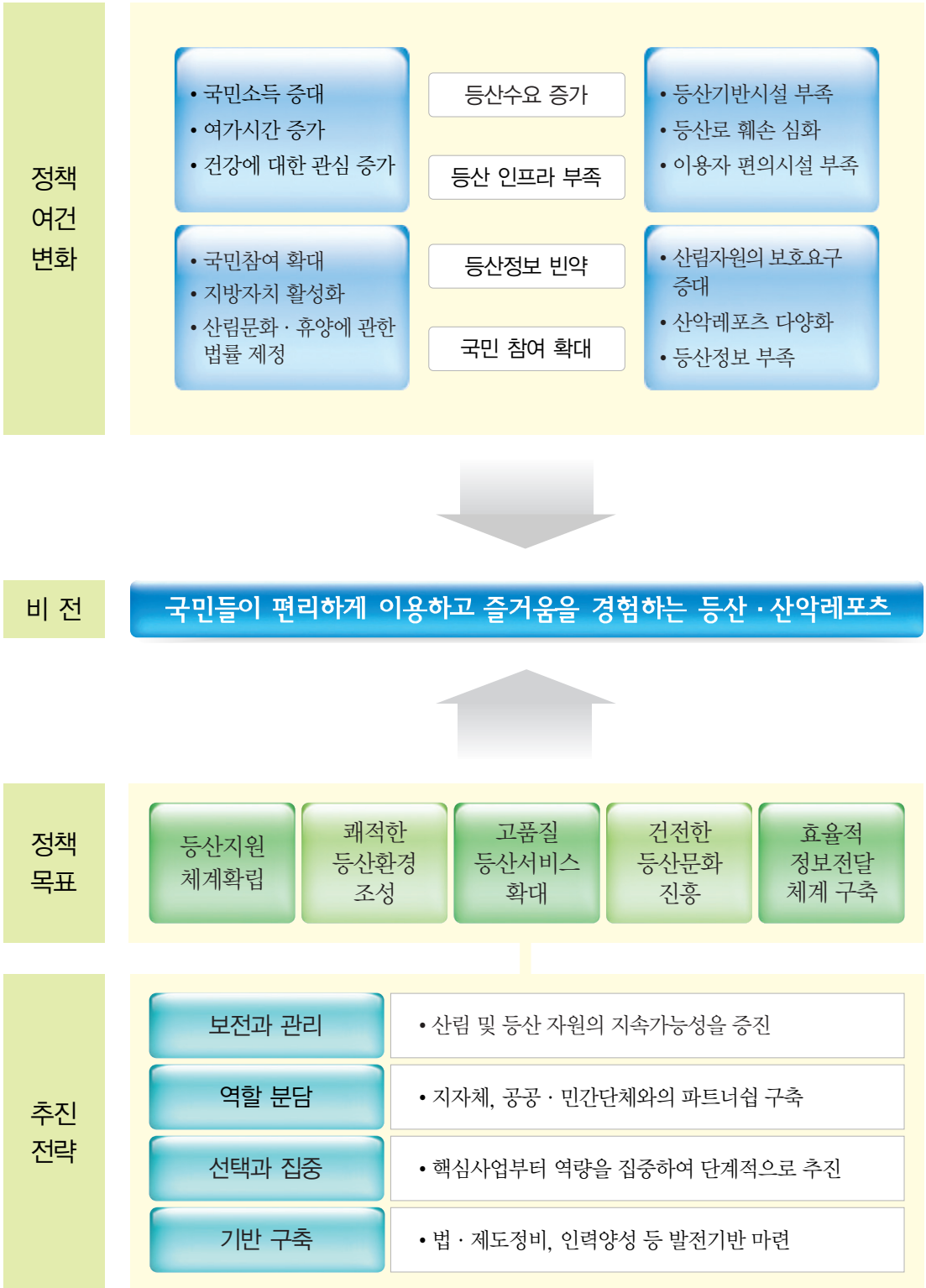
○ 다양한 안내 및 체험프로그램을 운영을 통한 고품질의 등산서비스 제공

○ 다매체시대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등산 · 산악레포츠 정보전달체계 구축

| 등산정책의 계량목표 |

| 연 도 | 2006년 | 2017년 | 비 고 |
|---|---|---|---|
| 국가등산로 지정 | - | 2,618km | 대간 및 정맥 |
| 등산로 훼손구간 정비 | 69km | 2,595km | 전국 등산로 |
| 등산지도 | - | 786도엽 | 1:25,000 기준 |
| 산악레포츠 가능 임도 | 500㎞ | 1,000㎞ | 임도활용구간 |
| 지역 특색 숲길 | - | 2,618km | 대간 및 정맥 |
| 등산학교 운영 | 1,185명 | 3,500명 | 5개 교육과정 |
| 등산안내인 | 30명 | 150명 | 100대 명산 |
| 등산로 모니터 요원 | 55명 | 760명 | 주요 명산 |

## | 등산정책의 계량목표 |


정책 여건 변화
• 국민소득 증대
• 여가시간 증가
•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
등산수요 증가
• 등산기반시설 부족
• 등산로 훼손 심화
• 이용자 편의시설 부족
등산 인프라 부족
• 국민참여 확대
• 지방자치 활성화
• 산림문화 · 휴양에 관한 법률 제정
등산정보 빈약
• 산림자원의 보호요구 증대
• 산악레포츠 다양화
• 등산정보 부족
국민 참여 확대
비 전
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즐거움을 경험하는 등산 · 산악레포츠
정책 목표
등산지원 체계확립
쾌적한 등산환경 조성
고품질 등산서비스 확대
건전한 등산문화 진흥
효율적 정보전달 체계 구축
추진 전략
보전과 관리
• 산림 및 등산 자원의 지속가능성을 증진
역할 분담
• 지자체, 공공 · 민간단체와의 파트너쉽 구축
선택과 집중
• 핵심사업부터 역량을 집중하여 단계적으로 추진
기반 구축
• 법 · 제도정비, 인력양성 등 발전기반 마련

## 2 목표별 추진방향

| 정책목표 | 추진방향 |
|---|---|
| 1. 등산지원체계 구축 | • 전국 등산로 유형 및 등급 지정<br>• 국가 및 지방 등산로 지정<br>• 국립등산지원센터 설립 |
| 2. 등산자원 조사 및 관리 | • 등산 자원조사<br>• 등산로 기본도 제작<br>• 등산 · 산악정보 DB 구축<br>• 등산로 및 산악레포츠 시설 관리기준 제정 |
| 3. 쾌적한 등산 및 산악레포츠 환경 조성 | • 훼손 등산로의 단계적 정비<br>• 등산로 안내 및 편의시설 설치<br>• 등산로의 체험기능 강화<br>• 등산로 휴식년제 시행<br>• 임도를 활용한 산악레포츠 코스 개발<br>• 산악레포츠 시설 정비<br>• 지역 특색 숲길 개발 |
| 4. 고품질의 등산서비스 제공 | • 등산안내센터 설치 · 운영<br>• 산악기상 및 영상정보 서비스 실시<br>• 등산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기회 확대<br>• 등산객 안전관리 강화 |
| 5. 건전한 등산 · 산악레포츠 문화 진흥 | • 등산문화캠페인 전개<br>• 산악관련 기관 · 단체와의 파트너쉽 구축 |
| 6. 효율적인 정보전달체계 구축 | • 산악정보시스템 확대 · 개선<br>• 산악 · 등산관련 컨텐츠 개발 및<br>• 다양한 산악정보 전달체계 구축 |

KOREA FOREST SERVICE
www.foa.go.kr



# 제4장

# 세부 추진계획


1. 등산지원체계 구축 33
2. 등산자원 조사 및 관리 39
3. 쾌적한 등산환경 조성 42
4. 산악레포츠 시설 확충 47
5. 등산서비스 확대 50
6. 등산지원 기반구축 54

# 1 등산지원체계 구축

## 현황 및 추진방향

○ 대부분의 등산로 관리주체의 부재와 예산부족 등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

○ 대간, 정맥 등 주요 산줄기 등산로의 경우 행정경계에 위치하여 지방자치단체간 관할이 모호하여 관리효율성 저하

▶ 등산지원체계를 확립하여 국가 및 지방등산로를 지정하고, 등산로의 연계성 강화와 등산기반시설의 확대로 다양한 등산수요를 충족

등산로 유형 및 등급 분류 → 국가 및 지방 등산로 지정 → 지역 특색 숲길

## 1) 등산로 유형 및 등급 분류

❑ **등산로의 특성, 지원주체 등에 따라 「국가등산로」,「지방등산로」,「지역등산로」 등으로 등산로 지원체계를 구분**

○ 「산림문화 · 휴양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산로관리청별로 관리범위 구분

– 국가등산로 :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등산로

– 지방등산로 : 광역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등산로

– 지역등산로 :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등산로

○ 국가, 지자체 등 관리주체별로 단계적으로 관리대상 등산로 지정

– 국가등산로를 우선 지정한 후 지자체별로 지방등산로, 지역등산로를 지정

❑ **등산로 노선별로 입지여건, 이용형태를 기준으로 유형 구분**

○ 등산로의 주요 기능에 따라 일반등산로, 관찰등산로, 종주등산로, 산책등산로 등으로 분류

| 구 분 | 개 념 |
|---|---|
| 일반등산로 | 산록부나 산정상에 이르는 등산 전용 보행도로 |
| 관찰등산로 | 자연학습 또는 자연탐방 목적의 완경사 보행도로 |
| 종주등산로 | 산정상 지점들을 연결하는 능선부에 위치한 종주 목적의 등산로 |
| 산책등산로 | 가벼운 산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완경사의 보행도로 |

○ 등산로 기능에 따라 시설기준을 차별화하여 다양한 휴양기회스펙트럼(ROS) 제공
- 대간, 정맥 등 주요 산줄기의 등산로 등은 인공적 시설물을 최소화하여 자연형으로 관리
- 도시근교 생활권 등산로는 이용자 편의성 증진을 위해 시설 정비

❑ **등산로의 보행여건에 따라 이용등급 구분**

○ 등산로의 경사도, 보행편의성, 편의시설 유무 등을 기준으로 분류
- 1급 : 사고의 위험이 높아 전문적인 장비가 필요한 등산로
- 2급 : 전문적인 장비는 필요치 않으나 노약자 등이 보행하기 어려운 등산로
- 3급 : 어린이, 노약자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완경사 등산로

○ 등산로 등급별로 권장 이용수준, 위험구간 등을 표시하여 안전사고 사전예방
- 1급 및 2급 등산로를 중심으로 이용자 유의사항 등을 홍보

## 2) 국가 및 지방등산로 지정

❑ **백두대간과 9개 정맥 산줄기 등의 주요 등산로를 「국가등산로」로 지정 · 관리**

○ 주요 등산로 및 역사 · 문화적으로 의미가 있는 등산로를 발굴 지정
- 백두대간 등산로 및 접근등산로 등을 우선 지정
- 낙동정맥 등 9개 정맥 산줄기 등산로로 단계적으로 확대

※ 지정대상 : 2,764km(백두대간 684, 9개 정맥 2,080)

○ 국립공원구간중 통행 불가능 지역은 환경부,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
- 국립공원 비법정탐방로는 법정탐방로로 지정토록 협의

※ 백두대간에 속하는 국립공원의 비법정탐방로 현황 : 13개소, 95km

○ 국가등산로에 대한 지원 강화 및 국유화 추진
- 국가등산로중 사유림 구간에 대한 관리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위탁 관리(국립등산지원센터 설립 후에는 국립등산지원센터에 위탁)
- 국가등산로에 대해서는 등산로 매수제도를 활용하여 국유화 추진

❑ **지방자치단체별로 관할 지역내 등산로를 지방등산로로 지정 유도**

○ 시 · 도, 시 · 군별로 주변 산줄기의 순환 등산로를 우선 지정토록 추진
- 주요 산의 등산로, 생활권 등산로 등 등산로 유형별로 구분 지정

○ 지정 등산로의 정비 및 관리에 대한 지원 확대
- 등산기본도에 표기, 산악정보시스템을 통한 안내 등 홍보 지원
- 등산로 정비시 사업비 우선 배정 및 보조율 상향 등 지원 확대

## 국가등산로 지정(안)




| 구간 | 시 점 | 종 점 | 거리(㎞) |
|---|---|---|---|
| 백두대간 등산로(남한) | 설악산 | 지리산 | 684 |
| 한북정맥 등산로(남한) | 장명산 | 오두산 | 165 |
| 한남정맥 등산로 | 칠장산 | 문수산성 | 210 |
| 한남금북정맥 등산로 | 속리산 천왕봉 | 칠현산 | 178 |
| 금북정맥 등산로 | 칠현산 | 안흥진 | 285 |
| 금남정맥 등산로 | 마이산 | 부소산 조룡대 | 129 |
| 금남호남정맥 등산로 | 장수 영취산 | 진안 부귀산 | 66 |
| 호남정맥 등산로 | 섬진강 | 백운산 | 395 |
| 낙동정맥 등산로 | 매봉산 | 다대포 물운대 | 412 |
| 낙남정맥 등산로 | 지리산 영신봉 | 낙동강 분산 | 240 |

### 3) 전국 등산로의 연계성 강화

❑ **대간, 정맥 등 주요 산줄기의 등산로를 기반으로 전국 등산로네트워크 구축**

○ 국가등산로와 지방등산로를 중심으로 전국 등산로의 연결성 확보
- 국가등산로를 간선으로, 지방등산로를 지선으로 하여 연결
- 국가등산로와 지방등산로의 연결성을 확보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

○ 시 · 도 및 시 · 군 단위 일주 등산로 노선 개발과 연계
- 기 개발된 시 · 도, 시 · 군 일주 등산로를 활용하여 구축
- 지역별로 생태적, 역사 · 문화적으로 중요한 등산로를 발굴하여 연계
- 노선선정 단계에서부터 해당 지자체, 시민단체 등의 의견 수렴

○ 장기적으로 산줄기의 연결성이 확보되는 생활권 등산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
- 마을 뒷산, 공원 등 도시근교 생활권 등산로까지 연결 확대

❑ **등산로간 연결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연결로 확보**

○ 등산로간 연계성 증진을 위해 다양한 연결로 및 접근로 발굴 및 개발
- 노선간 연계가 필요한 등산로를 중심으로 마을길, 농로 등 연결로 확보
- 도로개설로 폐지된 옛길 등을 복원 · 활용

○ 등산로 노선과 연결로의 통합 관리체계 구축
- 연결로 관리시 등산로 관리기준을 적용하여 관리효율성 증진
- 등산로와 동일한 체계의 안내시설, 이정표 등 설치

### 4) 지역특색 숲길 개발

❑ **백두대간 등산로를 중심으로 백두대간 숲길 조성**

○ 기존 백두대간 등산로, 임도 등을 기초로 권역별로 노선 지정
- 지리산, 덕유산, 속리산, 소백산, 태백산, 오대산, 설악산 등 7개 권역으로 구분
- 노면, 주변 산림식생 등 훼손구간을 조사하여 단계적으로 정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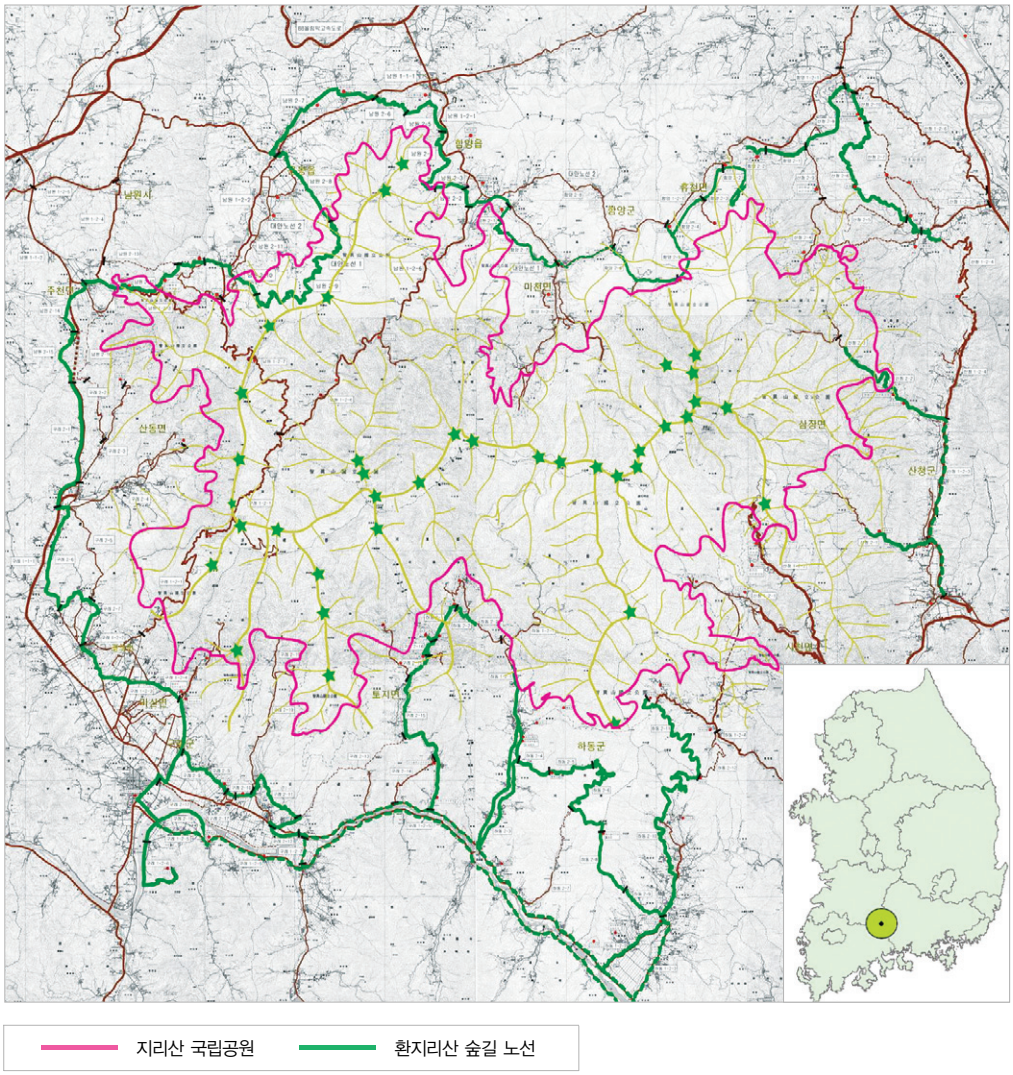
○ 권역별로 다양한 주제를 갖는 2~3개의 체험형 세부노선 설치
- 학습형 : 역사 · 문화유적탐사, 야생화탐사, 산림생태탐사 등

– 산악레포츠형 : 산악자전거, 산악마라톤, 산악승마, 패러글라이딩 등

○ 전체 노선을 대상으로 안내 및 편의시설 정비
– 노선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일정거리마다 이정표, 위치표지판, 간이 대피소, 화장실 등 이용자 안전 및 편의시설 설치
– 기 개발된 백두대간 CI 등을 활용하여 전체 노선의 통일성 확보

○ 백두대간 숲길 관리협의체 구성
– 국유림관리소, 지자체, 국립공원사무소, 지역 산악단체 등을 중심으로 관리협의체 구성 · 운영
– 구간 연결성 확보, 휴식년제 운영 등 노선에 관한 제반사항 협의

**| 환지리산 숲길 노선(안) |**



## 단계별 추진일정

| 단 계 | 기 간 | 조사내용 |
|---|---|---|
| 1단계 | 2007~2008년 | • 국가등산로 지정<br>• 지방자치단체별 지방등산로 지정 유도<br>• 백두대간 국가숲길 시범구간 조성<br>• 환지리산 숲길 시범구간 조성 |
| 2단계 | 2009~2012년 | • 백두대간 국가숲길 완성<br>• 백두대간 국가숲길 관리협의체 구성<br>• 환지리산 숲길 완성 |
| 3단계 | 2013~2017년 | • 낙동정맥 등 정맥권역 숲길 조성 추진<br>• 백두대간 국가숲길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|

# 2 등산자원 조사 및 관리

## 현황 및 추진방향

○ 정확한 등산로 현황, 이용실태 등을 파악하지 못해 등산로의 체계적 관리가 어렵고, 많이 알려진 일부 산과 등산로에 이용이 집중되어 등산로 훼손 심화

○ 주요 명산을 중심으로 등산지도가 제작되어 활용되고 있으나 정확도가 떨어지고, 많은 등산로가 누락되어 등산지도의 신뢰성이 부족함

▶ 주요 산별로 다양한 등산정보를 조사하여 정보화하고, 등산로 관련 다양한 정보를 수록한 등산안내 지도의 제작 및 배포하여 등산객의 이용편의 증진

등산 자원조사 | 등산로 주변 경관 관리 | 등산지도 제작 | 시설기준 제정

## 1) 등산 · 산악레포츠 자원조사

### ❑ 대간, 정맥 등 주요 산줄기 및 도시생활권 등산로 현황조사 실시

○ 등산로 분포현황, 이용빈도, 훼손실태 등을 조사
- 산림청에서 조사지침 수립후 지방자치단체, 지방산림청별로 조사
- 등산로 주변의 동 · 식물상 및 역사 · 문화 · 관광자원조사도 병행
- 향후 등산로 정비 및 시설확충을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

○ 등산로의 적정 이용수준을 고려한 노선별 수용력 조사 · 산출
- 노선별로 훼손실태, 이용현황, 생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산출
- 국립산림과학원, 대학 등의 전문가들로 조사단 구성 · 운영

○ 산악레포츠 종목별 시설현황, 이용빈도, 문제점 조사
- 종목별 산림내 시설현황, 이용자 수, 빈도 및 산림훼손 실태 등 조사
- 무분별한 산악레포츠 시설설치로 인한 산림훼손 현황 파악

### ❑ 등산로 유형별로 기준 및 지표를 선정하여 지속적 모니터링 실시

○ GPS(Global Positioning System)를 이용하여 등산로 주변 훼손지, 주요 동 · 식물 서식지 등의 위치를 파악하여 과학적 관리기반 마련
- 고정조사구를 설치하여 생태계 변화 등을 장기적으로 모니터링

○ 모니터링 결과를 공표하고 등산로관리계획 수립시 반영
-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등산로 관리 및 정비사업 실시

## 2) 등산로 주변 경관관리 강화

### ❑ 등산로 주변 경관을 생태적 특성을 반영한 자연적 경관으로 관리

○ 등산로 주변 산림의 경관관리 원칙 제정

- 주요 산별로 지역고유의 특성과 다양성을 살릴 수 있도록 관리
- 등산로 주변 일정 거리는 벌채를 제한하고 숲가꾸기시 경관요소 고려

○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 지침 등 숲가꾸기 관련 규정에 반영

-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여 등산로 주변 숲가꾸기 기준 제정

### ❑ 등산로변 조망점(viewpoint)에 대한 관리 강화

○ 등산로별로 주요 조망점에 대한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체계적으로 관리

- 등산지도 등에 조망점을 표기하고 조망점에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이용객들에게 조망정보 제공

○ 조망점별로 시야확보와 우수한 경관창출을 위해 숲가꾸기 실시

- 넓은 시야가 확보되도록 정리하고 숲 내부가 잘 보이도록 고사지 정리

## 3) 전국 등산로 기본도 제작 및 등산 · 산악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

### ❑ 전국 등산로 및 산악레포츠 지도 제작

○ 전국 단위, 지역별 및 주요 산별 등산로 기본도 제작

- 방문자센터, 이정표, 약수터 등 이용자 편의시설 및 안내시설 등을 표기하여 이용편의성 증진

○ 등산안내센터 등을 통해 등산객들에게 배포

- 등산관련 정보제한에 따른 이용집중으로 인한 등산로 훼손 방지

○ 국토지리정보원과 협의하여 국가기본도에 반영 추진

- 인터넷 등을 통해 국민 누구나 등산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

### ❑ 등산로 및 산악레포츠 자원 DB 구축

○ 등산로 및 산악레포츠 자원현황, 이용형태 등의 데이터베이스 구축

- 지역별, 산별, 노선별로 관련 자료를 정보화하여 관리효율성 제고
- 산악레포츠 종목별, 장소별로 현황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

○ 산림청「숲에 On」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대국민 서비스 제공
- WebGIS 등을 활용하여 산악정보 코너를 확대 개편

## 4) 등산로 및 산악레포츠 시설 및 관리기준 제정

### ❑ 등산로 유형 및 등급별 이용가이드 및 관리매뉴얼 제작

○ 등산로 종류 및 등급별로 등산객을 위한 이용가이드 개발
- 일반 등산객을 위한 등산교육과 연계하여 등산교육 제공

○ 등산로 유형 및 등급별로 시설설치 수준, 관리방향 등 개발
- 등산로의 유지 · 보수 등을 위한 관리 매뉴얼 개발

### ❑ 산악레포츠 종목별 시설기준 마련 및 관련 법규 개정

○ 종목별 실태조사와 산지훼손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기준 선정
- 자원조사결과, 외국사례 등을 고려하여 종목별 기준 마련
- 종목별로 관련 협회 또는 동호회 등의 의견을 수렴

○ 국유림내 산악레포츠 시설 설치기준 제정
- 국유림 관련 법규에 반영하여 산악레포츠 활성화 유도

**단계별 추진일정**

| 단 계 | 기 간 | 조사내용 |
|---|---|---|
| 1단계 | 2007~2008년 | • 백두대간 및 정맥 등 주요 산줄기 등산로 분포현황 조사<br>• 도시생활권 등산로 분포현황 조사<br>• 등산로 주변 경관관리 원칙 제정<br>• 전국 등산로 지도 제작 |
| 2단계 | 2009~2012년 | • 등산로 이용형태 및 이용빈도 조사<br>• 등산로별 자원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|
| 3단계 | 2013~2017년 | • 등산로 유형 및 등급 분류<br>• 등산로별 적정 수용력 산정 |

# 3 쾌적한 등산환경 조성

**현황 및 추진방향**

○ 대도시 근교, 국립공원 등 일부지역을 제외한 많은 등산로가 바닥침식, 등산로 확대로 훼손되고 있어 등산객의 안전을 위협

○ 등산로에 대한 정보가 제한되어 있고, 등산로의 안내 및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등산객들의 불편이 가중

▶ 등산로에 다양한 안내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고, 훼손된 등산로는 휴식년제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복원 및 정비 추진

훼손 등산로 정비 | 안내 및 편의시설 설치 | 등산로 휴식년제 운영

## 1) 훼손 등산로의 정비

### ❑ 훼손된 등산로의 단계적 정비 및 이용불편구간의 구조개량 추진

○ 백두대간 등 주요 산줄기의 등산로를 우선하여 복원
- '등산로 정비매뉴얼'(산림청, 2006)에 따라 훼손유형별로 복구
- 동일 노선에서는 훼손이 심한 구간부터 단계적으로 정비 추진

※ 연간 정비계획 : ('06) 76km → ('07) 93km → ('12) 130km → ('17) 130km

○ 급경사지, 식생파괴가 심한 구간은 보행을 위한 구조개량 추진
- 청소년, 노인, 여성 등 노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량
- 등산로의 정비가 불가능한 지역은 대체 노선 발굴 후 폐쇄

○ 주체별로 역할 분담 및 파트너쉽 구축 추진
- 국 가 : 등산로 정비 및 관리 지침 마련, 관리모델 제시, 재정지원 등
- 지자체 : 관할구역내 등산로 정비 실행
- 시민단체 : 등산로 조사 및 모니터링 협조

**| 외국의 등산로 관리 사례 |**

○ 영국(England)의 등산로 현황
- 법적 근거 : The National Parks and Access to the Countryside Act(1949)
- 총연장 193천km (도보 145, 승마 · 자전거 40, 기타 8)
- 여가기회 제공을 위해 계속하여 등산로 신규 확장 추진

○ 미국의 등산로 관리현황
- 법적 근거 : National Trails Act(1968)
- National Trail 현황 : 경관 8, 국가유적 16, 국가휴양 900개소 이상

※ 애팔레치아 트레일(Appalachian Trail) 현황
- 총연장 3,456km, 미국 동부지역 14개주 관통 (1937년 완성)
- 주요시설물 : 목재교량, 대피소, 표지판, 보조트레일 등



**| 잘 관리된 등산로 |**



**| 일반 산림지역의 등산로 훼손실태 |**

## 2) 등산로 안내 및 편의시설 설치

### ❑ 등산로 표준 안내시설 기준 제정 및 유형별 안내시스템 도입

○ 등산로 표준 안내시설 기준을 개발하여 안내체계의 통일성 확보
- 주위 경관과 어울리고 해당 지역의 특징을 나타내는 형태와 디자인으로 제작
- 백두대간 등산로는 기 개발된 픽토그램 등을 활용




| 주요 등산로 픽토그램 예 |

○ 노선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일정거리마다 이정표 등을 설치
- 권역, 구간, 이동방향 및 주요 지점까지의 거리 등을 안내
- 목재 등 자연친화적 소재 활용하여 주변 경관과 조화롭게 설치

### ❑ 코스 주변에 일정거리 마다 위치표지판, 간이 대피소, 화장실 등 이용자 안전 및 편의시설 설치

○ 일정 거리별로 위치표지판을 설치하여 효율적인 응급조치 도모
- 위치표지판에 현 위치와 신고처를 표시하여 산악구조용을 활용

○ 기상이변시 피난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선 주변에 간이 대피소 설치
- 경관훼손 방지를 위해 자연친화형 소재를 활용하여 소규모로 설치

○ 시설도입시 주변경관과의 조화, 환경오염 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산림훼손 방지
- 설치전 등산로관리기관, 시민단체,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반영




| 응급구조 위치판 |



| 간이 대피소 |



| 간이 대피소 |

❑ **노령인구 · 어린이 및 장애우의 등산로 접근성 증진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(universal design) 도입**

○ 장애우의 등산로 접근편의성 증진을 위해 등산로 정비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

– 도시생활권 등산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추진 후 단계적으로 확대

○ 등산로 조성 · 관리 매뉴얼에 반영하여 신규 조성 · 정비 등산로로 확대 적용

– 점자 안내책자 등 장애우를 위한 등산로 안내 및 체험시설 도입

### 3) 등산로의 체험기능 강화

❑ **등산로의 국토순례 및 숲체험 기능 강화**

○ 등산을 하면서 숲체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 설치

– 야생동식물 해설 표지판, 경관해설판, 조류관찰대 등

○ 등산로를 활용한 청소년의 국토순례 활동 지원

– 단기, 중기, 종주형 등 다양한 탐방코스 조성 운영

– 테마별, 계절별, 지역별 청소년 탐방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

– 방학기간 동안 역사문화 체험, 산림생태체험 캠프 운영

❑ **산촌마을, 자연휴양림, 폐교 등을 이용객을 위한 숙박시설로 활용**

○ 장기간 이용자를 위해 구간별로 인근 산촌마을, 자연휴양림 등을 지정하여 숙박시설로 활용

– 주변의 산촌마을, 자연휴양림 등 숙박시설 연계하여 안내서비스 제공

○ 자연휴양림, 산촌마을이 없는 곳은 폐교 등의 시설을 확보하여 야영장으로 활용

### 4) 등산로 휴식년제 시행

❑ **지자체, 지방청 등 등산로관리청별로 등산로 실태조사결과를 토대로 지정 · 고시**

○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년 단위로 지정하고 사전예고 실시

– 산림청 「숲에 On」시스템, 뉴스레터 등을 통하여 대국민 홍보

○ 불필요한 등산로 및 복원이 불가능한 등산로 폐쇄 추진
- 샛길 등산로, 복원이 불가능한 구간은 대체노선 확보 후 폐쇄
- 등산로 이용현황, 훼손실태, 이용자 의견, 주변 산림식생의 훼손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

### ❑ 등산로 휴식년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단속 강화

○ 휴식년제 실시 구간의 출입자에 대한 적발 및 과태료 부과
- 「산림문화 · 휴양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과태료 부과

○ 산불단속, 산림보호활동 등과 연계하여 단속의 실효성 제고
- 산림보호활동 범위에 등산로 대상 단속활동 추가

#### 단계별 추진일정

| 단 계 | 기 간 | 조사내용 |
|---|---|---|
| 1단계 | 2007~2008년 | • 등산로 표준 안내시설 기준 제정<br>• 등산로 정비 및 안내 · 편의시설 설치<br>• 등산로 휴식년 및 폐쇄 대상 등산로 분류 |
| 2단계 | 2009~2012년 | • 등산로 정비 및 안내 · 편의시설 설치<br>• 연차별 등산로 휴식년제 실시 및 폐쇄<br>• 등산로 휴식년제 평가 |
| 3단계 | 2013~2017년 | • 등산로 정비 및 안내 · 편의시설 설치<br>• 연차별 등산로 휴식년제 실시 및 폐쇄<br>• 등산로 휴식년제 평가 |

# 4 산악레포츠 시설 확충

## 현황 및 추진방향

○ 모험형 관광수요의 증대에 따라 다양한 산악레포츠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해 일부에서는 산림훼손 문제 발생

○ 산림내에 산악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나 많은 임도시설이 산림경영 목적으로만 활용되어 효율성 저하

▶ 기존 임도시설을 정비하여 산악마라톤, 산악자전거 등 산악레포츠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고 기존시설 정비와 국유림내 산악레포츠 시설을 확충

임도 활용 확대 | 산악레포츠 시설 정비 | 산악레포츠 시설 확대

## 1) 임도를 활용한 산악레포츠 코스 조성

### ❑ 기존 임도에 대해서 산림휴양 이용가능성을 평가하여 등급 구분

○ 임도의 물리적 여건,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산림휴양 이용등급 평가
- 임도의 경사도, 노면상태, 연장거리, 노선배치 현황 등을 고려

○ 이용가능성이 높은 임도는 안전시설 설치후 단계적으로 개방
- 기존 등산로와 연결되어 활용성이 높은 임도부터 우선 개방
- 임도별로 위험표지판, 사고방지시설 등 안전시설 설치
- 임도노선별로 진입구간 등에 활용가능 종목 등을 안내

### ❑ 임도 시설기준에 산림휴양분야 기준 반영 및 구조개량 추진

○ 임도의 산림휴양용 활용을 위해 임도 설계 및 시설기준 개정
- 산악레포츠 종목별 협회, 동호회 등과 시설기준 협의
-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관련 규정 개정시 반영
- 임도 신설시 산림휴양목적 활용을 위한 시설 설치 확대

○ 기존 임도의 구조개량시 급경사지, 위험구간에 대한 개량 추진
- 산림휴양용 임도의 시설기준을 반영하여 구조개량사업시 적용

| 임도의 산악레포츠 활용 가능성 |

○ 노　폭 : 임도의 노면은 약 4m 폭으로 설치되어 있어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산악레포츠를 즐길 수 있음

○ 경사도 : 통행방향 경사도가 6도 이내로 시설되어 걷기, 산악자전거, 산악스키, 산악마라톤을 즐기기는데 무리가 없음

○ 기울기 : 곡선구간에는 차량이 회전하면서 원심력에 의하여 전복되지 않도록 산지방향으로 약 5도의 기울기를 두고 시설하고 있어 속도감이 있는 산악자전거 및 산악스키에도 활용 가능

## 2) 산악레포츠 시설 정비

### ❑ 기존 산악레포츠 활용지역 정비

○ 산림훼손정도를 고려하여 개소별로 시설설치 여부 결정

– 산악레포츠 유형별로 산림피해정도, 시설설치 가능성 등을 검토

– 이용이 가능한 지역은 시설을 정비하되 산림훼손이 심한 지역은 폐쇄

○ 산악레포츠 시설지역은 이용객을 위한 안전 및 편의시설 설치

– 기상이변시 이용객 안전을 위한 대피소 설치 및 구급장비 비치

– 진입도로, 쉼터 등 편의시설 설치하여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

※ 시설(기존 · 신규) 정비 : ('08) 100km → ('12) 500km → ('17)) 1,000km

○ 국유림내 시설은「국민의숲」제도를 활용하여 위탁운영 활성화

–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동호회들과 관리협약을 체결하여 위탁 관리

### ❑ 석탄운반도로 등 산림내 레포츠 활용 가능시설을 적극 발굴하여 활용

○ 폐광지역의 임도로 전환된 석탄운반도로를 산악레포츠 시설로 전환

– 폐광지역을 대상으로 대상 도로현황, 정비가 필요한 사항 등을 조사

○ 지자체, 공공단체, 기업 등과 연계하여 산악레포츠 프로그램 개발

### 3) 산악레포츠 시설 확대

#### ❑ 전국 권역별 산악레포츠 단지 설립

○ 지역별로 특색 있는 산악레포츠 단지 지정 · 육성

– 개발 잠재력이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각종 산악레포츠 시설 설치

– 지원시설 : 산악자전거 대여소, 산악승마 교육장, 산악마라톤 코스 등

○ 해당 지자체 및 지역별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운영

– 기존 산악레포츠 대회 개최지역 등을 중심으로 추진

#### ❑ 국유자연휴양림과 연계한 산악레포츠 센터 건립

○ 자연휴양림 신규 조성시 적정 규모의 산악레포츠 센터 건립

– 산악자전거, 산악스키, 산악승마 등이 가능한 종합연수센터의 건립 지원

○ 기존 자연휴양림 가운데 권역별로 산악레포츠 전문 휴양림으로 특화

– 자연휴양림 구역내에 별도의 전용 코스 설치

– 초보자를 위한 장비대여, 정규 강습 서비스 제공

– 자연휴양림별로 계절별로 이용가능 종목을 선정하여 홍보

**단계별 추진일정**

| 단 계 | 기 간 | 조사내용 |
|---|---|---|
| 1단계 | 2007~2008년 | • 기존 임도에 대한 산림휴양 등급 구분<br>• 임도시설기준에 산림휴양분야 기준 반영 |
| 2단계 | 2009~2012년 | • 기존 산악레포츠 활용지역 정비<br>• 국유림내 산악레포츠 시설 설치<br>• 산림휴양기준에 부합하도록 임도시설의 정비 |
| 3단계 | 2013~2017년 | • 권역별 산악레포츠 단지 설치<br>• 자연휴양림과 연계한 산악레포츠 센터 건립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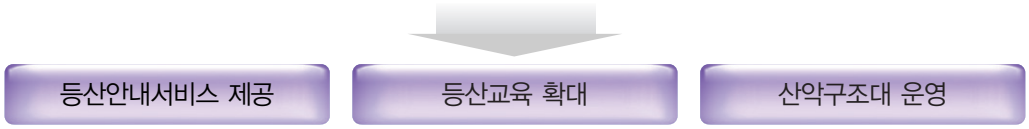
# 5 등산서비스 확대

**현황 및 추진방향**

○ 등산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초보자들은 적절한 안내를 받을 수 없어 적극적인 등산참여가 어려운 실정

○ 등산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산행중 조난사고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신속한 구조체계의 확립이 필요함

▶ 주요 산별로 등산안내센터를 설치하여 등산안내인 등을 배치하고, 산악구조대를 운영하여 양질의 등산서비스를 제공




## 1) 등산안내서비스 확대

### ❑ 100대 명산 등 주요 산별로 등산안내센터 설치 · 운영

○ 주요 산 및 등산로 진입구간에 등산안내센터 설치 · 운영

- 전국 주요 산 및 등산로별로 등산안내센터 설치
- 100대 명산에 우선 설치한 후 지역별로 단계적으로 확대
- 봄 · 가을철에는 산불감시센터 및 입산통제 기능 부여

○ 등산안내센터 시설 및 장비확충

- 산별로 등산지도, 산악기상정보 등 다양한 등산관련 정보 제공
- 등산안내 및 숲해설에 필요한 교구, 교재 등 비치

○ 등산안내센터간 정보교류 및 협조체계 구축

- 무전기, 구급약 등을 상비하고, 응급시 산악구조대와 연계체계 구축
- 지역별, 산별로 등산안내센터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보공유
- 자연휴양림, 한국관광공사, 시 · 도별 종합관광안내소 등과 연계하여 등산로 홍보

❑ **100대 명산 등 주요 산별로 등산안내인 및 숲해설가 배치**

○ 등산안내인, 숲해설가 등을 배치하여 등산객을 대상으로 안내 및 해설서비스 제공
- 이용자용 교재 및 등산안내서비스 매뉴얼 제작

○ 등산안내인 교육 확대를 통한 안내서비스 품질 향상
- 등산안내인에 대한 신규 · 보수교육의 정례화
- 자원봉사단체와 연계하여 시민 참여 활성화 유도

❑ **등산안내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 · 보급**

○ 등산안내 표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인력 육성
- 지역별, 산별로 등산안내 프로그램 개발
- 등산안내인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내실 있는 운영 유도

○ 등산안내센터를 통해 관련 프로그램 보급
- 주요 산별로 표준 안내 프로그램에 필요한 책자, 지도 등 제작 지원

## 2) 산악기상예보 및 영상정보 서비스 제공

❑ **산악기상 예보 대상지역 확대**

○ 100대 명산 등 주요 산을 대상으로 산악기상 예보서비스 실시
- 현재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산악기상 예보를 단계적으로 확대
- 기상청, 민간 기상정보사업자 등과 연계하여 산악기상 예보의 정확도 향상

○ 주요 산별로 산악기상관측장비 설치 확대 및 정비
- 산불방지용 자동기상관측장비(AWS)를 활용하여 산악기상측정시스템 구축
- 100대 명산에는 1개소 이상의 자동기상관측장비 설치하고 기 설치된 기상관측장비중 측정범위가 제한되어 활용이 어려운 장비는 단계적으로 교체

❑ **산악영상정보 서비스 제공**

○ 인터넷, 산악방송 등을 통한 주요 산별 산악영상정보 제공
- 산불 무인감시카메라를 활용하여 주요 산별로 실시간 산악영상 제공
- 산악기상 예보가 어려운 지역은 영상정보를 통한 날씨확인 서비스 실시

○ 지방청, 수목원 등과 연계하여 지역별, 시기별로 특화된 영상서비스 개발
- 주요 수종별 개화 및 단풍정보, 알려지지 않은 산 등을 소개

### 3) 등산교육 확대

#### ❑ 등산학교 프로그램 및 교육기회 확대

○ 보행중심의 산행을 위한 등산교육 프로그램 신설
- 고산등정, 암벽등반 등 전문교육과정 외에 보행중심의 일반인 교육과정 신설
- 자연교육 및 산림보호를 위해 생태교육 실시

○ 수도권을 중심으로 운영중인 등산학교를 지자체별로 실시
- 한국산악회에 위탁하여 실시중인 등산학교를 모델로 지자체별로 운영
- 희망 지자체부터 단계적으로 확대

#### ❑ 어린이 및 청소년 등산학교 운영

○ 청소년 체험학습기회 확대를 위한 등산학교 운영
- 초 · 중 · 고등학생을 위한 휴무 토요일 등산교육 프로그램 운영
- 지역 교육청과 연계하여 체험학습 및 봉사활동 인정 추진

※ 초 · 중 · 고 특별활동시간 : 초1-3년 30~34시간, 초4-고1년 68시간

○ 청소년 등산학교 운영에 필요한 관련 시설 및 프로그램 확충
- 숲속수련장, 산림휴양관 등이 설치되어 있는 자연휴양림 우선 설치
- 학교별, 학년별 운영 프로그램 및 교육교재 개발

○ 유년기 등산문화 체험기회 확대
- 유아용 등산문화체험 프로그램 개발 · 운영
- 지역단위로 유치원연합회 등과 연계하여 추진

### 4) 등산객 안전관리 강화

#### ❑ 조난객에 대한 구조 · 구급서비스 제공

○ 산림청 항공관리본부 및 각 지소별로 산악구조대 편성 · 운영
- 119 구조대와 연계하여 조난 등산객의 신속한 구조 체계 확립

○ 민간산악단체 등과 연계한 신속한 산악구조체계 구축
- 한국산악회, 대한산악연맹 등 지역별 산악단체와의 통신체계 확보

### ❑ 구조인력의 전문성 강화

○ 산악구조대별로 응급구조사 등 전문 구조인력 배치
- 산악구조대별로 응급구조사를 채용하여 법적 기준 충족
- 항공관리소별로 지역대학 등과 연계하여 구조대원에 대한 응급구조사 위탁교육 실시

○ 산악구조대원에 대한 정기적인 응급구조 교육 실시
- 적십자 등 응급처치 교육기관에서 정기적인 응급처치 교육 이수
- 성인용 심폐소생인형, 기관삽관 모형 등 응급구조 교육장비 확보 및 훈련

### ❑ 응급구조 장비 및 시설 확충

○ 산악구조대별로 필수 응급구조 장비 확보
- 심실제세동기 · 휴대용산소소생기 · 산소포화도측정기 등 구급장비 보강

○ 민간산악단체에 대한 구급, 구조 장비 지원
- 들것, 부목 등 산악장비 및 응급구조장비 구입 지원

**단계별 추진일정**

| 단 계 | 기 간 | 조사내용 |
|---|---|---|
| 1단계 | 2007~2008년 | • 백두대간 국가숲길 구간 등산안내센터 설치<br>• 산악구조대 편성<br>• 산악기상 및 영상서비스 시범실시 |
| 2단계 | 2009~2012년 | • 청소년 등산학교 운영<br>• 100대 명산에 대한 등산안내센터 설치<br>• 산악기상 및 영상서비스 확대 |
| 3단계 | 2013~2017년 | • 등산학교 교육기회 확대<br>• 100대 명산에 대한 등산안내센터 설치 |

# 6 등산지원 기반구축

## 현황 및 추진방향

○ 등산관련 컨텐츠가 부족하고 마땅히 등산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없어 등산책자나 모집산악회에 의존

○ 등산인구의 증가로 각 지역마다 수 많은 산악회가 조직되어 운영중이나 이들과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통로가 없는 실정임

▶ 산악·등산관련 다양한 컨텐츠 개발 및 다매체 시대에 부응하는 다양한 정보전달 수단 마련하고 산악단체와 다양한 파트너쉽 구축

산악정보시스템 구축 | 다양한 컨텐츠 개발 | 산악단체 파트너쉽 구축

## 1) 산악정보시스템 및 등산로관리시스템 구축·운영

### ❑ 등산·산악정보 포털사이트로 산악정보시스템 확대 개편

○ 산림청 「숲에 On」시스템의 산악정보코너를 개선·발전

- 기존의 등산로 관련 컨텐츠 보완 및 개선 추진
- 한국관광공사 등 관광안내 사이트와 연계하여 국내외에 홍보 강화

○ 등산이용객의 정보교류 기능 강화

- 등산관련 각종 정보제공 및 종주 경험담 공유를 위한 커뮤니티 신설
- 민박 등 숙박시설, 교류 및 체험프로그램, 산촌마을 특산품 등 소개

○ 주기적인 자료갱신 및 이용활성화 제도 운영

- 포인트제 운영, 산악정보시스템 회원을 대상으로 웹진 발송

### ❑ 등산로 관리자를 위한 '등산로관리시스템' 구축·운영

○ 웹지아이에스(WebGIS) 등을 활용하여 인터넷 기반 등산로 관리프로그램 개발

- 등산자원조사를 통해 얻은 등산로 노선별 DB와 연계

– 현황조사, 노선관리, 안내 및 편의시설 관리,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등산관련 제반 업무를 지원

○ 지방청, 시 · 도 등 등산로관리청에 보급하여 등산로 표준관리시스템으로 정착
– 시군 행정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행정 효율성 제고

## 2) 산악 · 등산관련 컨텐츠 개발 및 정보전달체계 구축

### ❑ 산악 · 등산관련 컨텐츠 개발 지원

○ 산악 · 등산관련 컨테츠 표준화 및 다양화
– 주요 산별 개황, 등산지도, 등산로 소개 등 등산시 꼭 필요한 정보를 중심으로 산별 표준등산정보 선정

○ 케이블TV, 전문지 등과 연계하여 문자, 사진, 동영상 등 다양한 컨텐츠 개발
– 지역별, 시기별로 산림, 역사 · 문화, 관광자원 등을 소개
– 우리 산을 소재로 한 문학작품, 그림 등을 소개

### ❑ 기관 및 개인의 산악 · 등산관련 컨텐츠 개발 활성화

○ 방송채널사업자를 대상으로 산악관련 컨텐츠 개발 및 방송 전담기관을 선정
– 방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 · 운영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선발
– 산악 · 등산관련 영상컨텐츠 제작 및 우수 컨텐츠 구매 지원

○ 민간의 자율적인 컨텐츠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도입
– 등산 애호가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등산경험을 게재하는 '등산리포터' 선발
– 정기적인 산악 · 등산관련 컨텐츠 공모전을 개최하여 민간의 우수한 컨텐츠 발굴

### ❑ 다매체 시대에 부응하는 등산 · 산악정보 전달체계 마련

○ 등산 및 산악정보의 효율적인 전달을 위해 다양한 매체와 연계성 강화
– 방송사, 케이블TV, 인터넷 포털, 이동통신업체 등과 MOU 체결

○ 산악전문 방송사와의 연계를 통한 산악 · 등산정보의 안정적 전달체계 마련
– 산악전문 방송사를 활용한 등산안내인, 숲길조사원 교육 서비스 실시
–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과 연계하여 디지털 등산안내 서비스 시범 실시

### 3) 산악관련 기관 · 단체와의 파트너쉽 구축

❑ **등산정책협의회 구성 · 운영**

○ 산악단체, 시민단체 대표로 등산정책협의회 구성
- 등산 · 산악단체, 관련 전문가, 언론인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 유도
- 등산 및 산악관련 기관 · 단체간 정보공유 및 정책 네트워크 구축

○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지속적인 의견수렴
- 주요 등산정책에 대한 의논 및 자문 실시

❑ **주요 산별로 지역별 등산관리협의체 구성**

○ 국유림관리소, 지자체, 국립공원사무소, 지역 산악단체 등을 중심으로 구성 · 운영
- 구간 연결성 확보, 휴식년제 운영 등 노선에 관한 제반사항 협의
- 등산관리협의체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정보교류 활성화

○ 민간 중심의 자율적 등산로 관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
- 지역별 등산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장비 등을 지원
- 등산로 관리를 위한 기부금 모집 제도 도입

### 4) 등산문화캠페인 전개

❑ **등산문화 개선 캠페인 전개**

○ '흔적 남기지 않기(Leave No Trace)', '등산예절 지키기' 등 등산문화 개선 캠페인 전개
- 시설물 훼손, 음주산행, 고성방가 등을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계도

○ 안내책자 등을 제작 배포하고 언론사 등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홍보 실시
- 안내책자, 리플렛 등 홍보자료 제작 배포
- 등산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자연친화적 등산요령에 대한 교육 실시

❑ **자원봉사자, 산악회 등 민간의 자율적 참여 지원**

○ 산악단체 등과 연계하여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등산문화 개선 운동 전개
- 가칭 '1산악회 1구간' 자매결연을 통해 민간참여를 활성화

○ 주요 산별, 등산로별로 등산로 모니터 및 등산문화 계도를 위한 '명예산지기' 지정
– 산악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전국 주요 산별로 희망자를 '명예산지기'로 지정

## 5) 국립등산지원센터 설립

### ❑ 등산지원 전담기관으로 국립등산지원센터 설립

○ 「산림문화 · 휴양에 관한 법률」을 개정하여 법적 근거 마련
– 국립등산지원센터 설립근거, 조직체계, 임무 등 관련 규정 반영
– 국유재산 무상사용, 대여 등 지원 근거 반영

○ 장기적으로 가칭 '국립등산지원센터법' 제정 추진

### ❑ 등산로 관리 및 등산안내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

○ 국가등산로의 관리 및 등산안내 서비스 업무 전담
– 국가등산로의 안전점검 및 정비실시
– 등산안내 및 숲해설 등 체험서비스 제공

○ 지방자치단체 등산로의 위탁관리 수행
–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지자체 등산로 관리 수행

## 6) 국제협력 확대

### ❑ 등산 · 산악관련 기술교류 확대

○ 미국, 영국, 뉴질랜드, 일본 등 선진국의 등산로 및 등산관련 제도 벤치마킹
– 이용자 및 시설물 관리, 수용력 산정 등 관리기술 도입

○ 민관협력체계, 자원봉사활동 지원체계 등 선진적 운영체계 도입
– 선진국의 트레일 관리단체와의 인적교류 추진

### ❑ 민간차원의 국제협력 활성화

○ 자연보호 및 등산문화 개선운동 단체와의 교류 지원

○ 민간 산악단체의 해외 원정을 통한 국위 선양활동 지원

## 단계별 추진일정

| 단 계 | 기 간 | 조사내용 |
|---|---|---|
| 1단계 | 2007~2008년 | • 산악정보시스템 확대 개편<br>• 산악전문 방송과의 연계성 확보<br>• 등산정책협의회 구성 · 운영 |
| 2단계 | 2009~2012년 | • 산악 및 등산관련 컨텐츠 개발<br>• 주요 산별 등산관리협의체 구성 |
| 3단계 | 2013~2017년 | • 산악 및 등산관련 컨텐츠 개발<br>• 국립등산지원센터 설립 |



# 제5장

# 투자계획

1. 투자계획 총괄 61  2. 세부 투자계획 63

## 1 투자계획 총괄

○ 본 계획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2,390억원이며, 국고 1,554억원(65%), 지방비 836억원(35%)으로 구성됨

### 1) 연도별 · 재원별 투자계획

○ 연도별로는 2007년에 전체투자비의 4.5%(73억원), 제5차 산림기본계획 전반부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는 56%(1,332억원), 후반부인 2013년부터 2017년에는 40%(950억원)를 투입함

○ 재원별로는 국고가 전체투자비의 1,554억원(65%), 지방비는 836억원(35%)을 투입함

| 연도별 · 재원별 투자계획 |

(단위 : 백만원)

| 구 분 | 합 계 | 2007년 | 제5차 산림기본계획 기간 | | 비 율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| 전반기 | 후반기 | |
| 합 계 | 239,007 | 10,789 | 133,202 | 95,016 | 100% |
| 국 비 | 155,418 | 7,266 | 88,066 | 60,087 | 65.0% |
| 지방비 | 83,589 | 3,523 | 45,136 | 34,929 | 35.0% |
| 비 율 | 100% | 4.5% | 55.7% | 39.8% | - |

## 2) 사업별 투자계획

○ 등산로 정비 등 시설정비사업에 84.4%(2,017억원), 등산안내센터 운영 등 서비스 제공에 15.6%(373억원)를 투입

**| 사업별 · 재원별 투자계획 |**

(단위 : 백만원)

| 구 분 | 항 목 | 계 | 2007년 | 제5차 기본계획 기간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| | 전반기 | 후반기 |
| 합 계 | 사업비 | 239,007 | 10,789 | 133,202 | 95,016 |
| 등산로 실태조사 | 사업량(명) | 760 | 410 | 300 | 50 |
| | 사업비 | 11,830 | 6,382 | 4,670 | 778 |
| | 국비 | 8,280 | 4,467 | 3,269 | 545 |
| | 지방비 | 3,550 | 1,915 | 1,401 | 234 |
| 등산지도 제작 | 사업량(도엽) | 786 | – | 416 | 370 |
| | 사업비 | 1,572 | – | 832 | 740 |
| | 국비 | 1,572 | – | 832 | 740 |
| | 지방비 | – | – | – | – |
| 등산로 정비 | 사업량(km) | 2,595 | 141 | 1,054 | 1,400 |
| | 사업비 | 131,086 | 3,632 | 84,054 | 43,400 |
| | 국비 | 74,006 | 2,024 | 50,902 | 21,080 |
| | 지방비 | 57,080 | 1,608 | 33,152 | 22,320 |
| 등산로 모니터링 | 사업량(명) | 1,850 | – | 925 | 925 |
| | 사업비 | 12,362 | – | 6,181 | 6,181 |
| | 국비 | 10,357 | – | 5,179 | 5,179 |
| | 지방비 | 2,005 | – | 1,002 | 1,002 |
| 등산안내센터 설치 및 운영 | 사업량 | 100 | – | 50 | 50 |
| | 사업비 | 24,199 | 200 | 9,600 | 14,400 |
| | 국비 | 16,999 | 200 | 6,720 | 10,080 |
| | 지방비 | 7,200 | – | 2,880 | 4,320 |
| 등산교육 | 사업량(명) | 26,700 | 1,200 | 10,000 | 15,500 |
| | 사업비 | 4,448 | 200 | 1,666 | 2,582 |
| | 국비 | 3,174 | 200 | 1,166 | 1,808 |
| | 지방비 | 1,274 | – | 500 | 775 |
| 산악레포츠 시설확충 | 사업량 | 1,000 | – | 500 | 500 |
| | 사업비 | 46,405 | – | 22,845 | 23,560 |
| | 국비 | 34,255 | – | 16,770 | 17,485 |
| | 지방비 | 12,150 | – | 6,075 | 6,075 |
| 산악구조대 운영 | 사업량 | 110 | – | 55 | 55 |
| | 사업비 | 2,000 | – | 1,000 | 1,000 |
| | 국비 | 2,000 | – | 1,000 | 1,000 |
| | 지방비 | – | – | – | – |
| 산악정보 전달체계 구축 및 운영 | 사업비 | 2,850 | 300 | 1,500 | 1,050 |
| | 국비 | 2,850 | 300 | 1,500 | 1,050 |
| | 지방비 | – | – | – | – |
| 등산문화진흥 | 사업비 | 2,255 | 75 | 855 | 1,325 |
| | 국비 | 1,925 | 75 | 729 | 1,121 |
| | 지방비 | 330 | – | 126 | 204 |

## 2 세부 투자계획

### | 연도별 · 사업별 투자계획 |

(단위 : 백만원)

| 구 분 | 항목 | 합계 | 2007년 | 2008년 | 2009년 | 2010년 | 2011년 | 2012년 | 2013년 | 2014년 | 2015년 | 2016년 | 2017년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합 계 | 사업비 | 239,007 | 10,789 | 25,163 | 31,226 | 30,583 | 27,874 | 18,356 | 17,863 | 18,918 | 19,182 | 19,429 | 19,624 |
| 등산로 실태조사 | 사업량(명) | 760 | 410 | 200 | 50 | 50 | - | - | - | - | 50 | - | - |
| | 사업비 | 11,830 | 6,382 | 3,113 | 778 | 778 | - | - | - | - | 778 | - | - |
| 등산지도 제작 | 사업량(도엽) | 786 | - | 90 | 86 | 80 | 80 | 80 | 80 | 80 | 70 | 70 | 70 |
| | 사업비 | 1,572 | - | 180 | 172 | 160 | 160 | 160 | 160 | 160 | 140 | 140 | 140 |
| 등산로 정비 | 사업량(km) | 2,595 | 141 | 174 | 200 | 200 | 200 | 280 | 280 | 280 | 280 | 280 | 280 |
| | 사업비 | 131,086 | 3,632 | 13,331 | 22,130 | 20,690 | 19,223 | 8,680 | 8,680 | 8,680 | 8,680 | 8,680 | 8,680 |
| 등산로 모니터링 | 사업량(명) | 1,850 | - | 185 | 185 | 185 | 185 | 185 | 185 | 185 | 185 | 185 | 185 |
| | 사업비 | 12,362 | - | 1,236 | 1,236 | 1,236 | 1,236 | 1,236 | 1,236 | 1,236 | 1,236 | 1,236 | 1,236 |
| 등산안내센터 설치 및 운영 | 사업량 | 100 | - | 10 | 10 | 10 | 10 | 10 | 10 | 10 | 10 | 10 | 10 |
| | 사업비 | 24,199 | 200 | 1,453 | 1,707 | 1,960 | 2,147 | 2,333 | 2,520 | 2,707 | 2,893 | 3,080 | 3,200 |
| 등산교육 | 사업량(명) | 26,700 | 1,200 | 1,500 | 2,000 | 2,000 | 2,000 | 2,500 | 2,500 | 3,000 | 3,000 | 3,500 | 3,500 |
| | 사업비 | 4,448 | 200 | 250 | 333 | 333 | 333 | 417 | 417 | 500 | 500 | 583 | 583 |
| 산악레포츠 시설 확충 | 사업량 | 1,000 | - | 100 | 100 | 100 | 100 | 100 | 100 | 100 | 100 | 100 | 100 |
| | 사업비 | 46,405 | - | 4,805 | 4,105 | 4,860 | 4,160 | 4,915 | 4,215 | 4,970 | 4,270 | 5,025 | 5,080 |
| 산악구조대 운영 | 사업량 | 110 | - | 11 | 11 | 11 | 11 | 11 | 11 | 11 | 11 | 11 | 11 |
| | 사업비 | 2,000 | - | 200 | 200 | 200 | 200 | 200 | 200 | 200 | 200 | 200 | 200 |
| 정보전달체계 구축 및 운영 | 사업비 | 2,850 | 300 | 460 | 410 | 210 | 210 | 210 | 210 | 210 | 210 | 210 | 210 |
| 등산문화진흥 | 사업비 | 2,255 | 75 | 135 | 155 | 155 | 205 | 205 | 225 | 255 | 275 | 275 | 295 |

KOREA FOREST SERVICE
www.foa.go.kr



# 제6장

# 부 록

1. “흔적을 남기지 마세요” 실행원칙 67　2. 전국 등산로 현황 69　3. 산림문화 · 휴양에 관한 법률 70

## 1 "흔적을 남기지 마세요" 실행원칙 (Leave No Trace)

### 원칙 1 여행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세요

- 여러분이 방문할 지역에 관한 규정이나 규칙을 알아 두세요
- 갑작스런 날씨 변화, 위험 및 비상사태에 대한 대비를 하세요.
-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간을 피하여 여행계획을 세우세요.
- 작은 그룹으로 방문하세요. 큰 그룹은 4~6명의 그룹으로 나누어 방문하세요.
- 쓰레기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남은 음식은 다시 포장해서 가져오세요.
- 등산로 주변에 있는 페인트 표시, 돌무더기 또는 리본표시를 없애기 위해 지도 및 나침반을 사용하세요.

### 원칙 2 이동하거나 야영할 때는 바닥이 단단한 곳을 이용하세요

- 바닥이 단단한 곳이란 정비된 등산로, 야영장, 바위, 자갈, 건초, 눈을 말합니다.
- 호수와 계곡가에서 적어도 6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 야영하여 수변지역을 보호하세요.
- 좋은 야영장이 있지만 지정된 곳이 아니라면 야영장 위치를 바꾸지 마세요.
- 대중적인 지역에서는
- 기존 등산로와 야영장을 사용하세요.
- 등산로가 젖어 있어도 등산로 중앙으로 보행하세요.
- 야영장을 작게 만드세요. 식물이 없는 지역에서 활동하세요.
- 자연상태 지역에서는
- 야영장과 등산로를 만들지 않도록 분산하여 이용하세요.
- 자연이 영향을 받기 시작한 장소는 피하세요.

### 원칙 3 쓰레기를 바르게 처리하세요

- 가지고 온 것은 가지고 가십시오. 야영장과 머물렀던 지역에 쓰레기나 버린 음식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. 모든 쓰레기와 남은 음식, 찌꺼기는 싸서 가져오세요.
- 물, 야영장, 등산로로부터 적어도 60미터이상 떨어져서 20센티미터 깊이로 구덩이를 파고 배설물을 묻으세요.
- 화장지와 위생제품은 가지고 가십시오.
- 몸이나 그릇을 씻으려면 물을 시내가나 호수로부터 60미터 정도 떨어진 곳까지 길러온 다음에 적은 양의 생물분해성 비누를 이용하여 씻으십시오. 사용한 개숫물은 주변에 흩어 뿌리세요.

## 원칙 4 여러 분이 찾아낸 것은 그 자리에 그대로 남겨두세요

- 과거를 보존하십시오. 찾아보십시오. 그러나 문화 또는 역사적인 구조물이나 유물을 만지지 마세요.
- 바위, 식물 및 다른 자연물들을 당신이 발견한 그대로 남겨두십시오.
- 외래종이나 침입종 생물을 가져오지 마세요.
- 구조물, 가구, 호를 만들지 마세요.

## 원칙 5 모닥불을 피울 때는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세요

- 모닥불은 주변지역에 오래도록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 작은 버너를 이용하여 조리하고 야간에는 손전등을 이용하세요.
- 불을 피울 수 있는 곳에서는 주변에 둘레를 파고 불을 피우세요.
- 불을 작게 유지하세요. 손으로 부러뜨릴 수 있는 작은 나뭇가지를 이용하세요.
- 모든 나무를 완전히 태워 재를 만들고, 모닥불을 완전하게 끈 다음 차가워진 재를 뿌리세요.

## 원칙 6 야생동식물을 존중하세요

- 야생동식물은 떨어져서 관찰하고 야생동물을 좇아가지 마십시오.
-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지 마세요. 먹이를 주면 야생동물의 건강에 해롭거나 자연습성이 변할 수 있습니다. 또 포식자나 다른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.
- 야생동식물을 보호하고 음식물과 쓰레기를 안전하게 보관하세요.
- 애완동물을 항상 통제하거나 집에 두고 오세요.
- 짝짓기 시기나 둥지를 만드는 시기, 새끼를 기르는 시기, 겨울철 등 민감한 시기에는 야생동물을 피하세요.

## 원칙 7 다른 방문자를 생각하세요

- 다른 방문자를 존중하고 그들의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세요.
- 예의바르게 행동하시고, 등산로에서는 다른 이용자들에게 양보해 주세요.
- 등산로에서 짐을 가진 사람과 마주쳤을 때에는 아래쪽으로 비켜 주세요.
- 쉬거나 야영할 때에는 등산로나 다른 사용자들로부터 적당한 거리를 두세요.
- 자연의 소리가 있는 곳에서는 큰 소리로 떠들거나 소음을 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.

## 2 전국 등산로 현황

| 구 분 | | 산(개) | 노선(개) | 연장거리(㎞) | 정비대상(㎞) | 비 고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계 | | 1,735 | 4,290 | 17,598 | 4,894 | |
| 지자체 | 소 계 | 1580 | 3796 | 14,921 | 4,716 | |
| | 서 울 | 41 | 450 | 323 | 44 | |
| | 부 산 | 50 | 367 | 634 | 142 | |
| | 대 구 | 31 | 87 | 274 | 108 | |
| | 인 천 | 35 | 68 | 198 | 35 | |
| | 광 주 | 20 | 69 | 212 | 70 | |
| | 대 전 | 27 | 80 | 303 | 222 | |
| | 울 산 | 22 | 67 | 201 | 107 | |
| | 경 기 | 175 | 345 | 1,503 | 215 | |
| | 강 원 | 150 | 222 | 1,352 | 195 | |
| | 충 북 | 97 | 169 | 975 | 298 | |
| | 충 남 | 162 | 368 | 1,196 | 720 | |
| | 전 북 | 87 | 247 | 823 | 398 | |
| | 전 남 | 228 | 468 | 1,798 | 776 | |
| | 경 북 | 274 | 442 | 2,818 | 622 | |
| | 경 남 | 172 | 219 | 2,137 | 655 | |
| | 제 주 | 9 | 128 | 173 | 107 | |
| 지방청 | 소 계 | 140 | 225 | 1,521 | 178 | |
| | 북 부 | 38 | 51 | 339 | 15 | |
| | 동 부 | 35 | 80 | 640 | 84 | |
| | 남 부 | 34 | 53 | 332 | 14 | |
| | 중 부 | 15 | 19 | 89 | 3 | |
| | 서 부 | 18 | 22 | 121 | 63 | |
| 국립공원 | 소 계 | 15 | 269 | 1,156 | – | |
| | | 15 | 269 | 1,156 | – | |

## 3 「산림문화 · 휴양에 관한 법률」의 등산관련 내용

| 법 률 | 시행령 | 시행규칙 |
|---|---|---|
| 제정 2005. 8. 4 법률 제7676호<br><br>제3장 산림문화 · 휴양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인증 등<br><br>제7조(산림문화 · 휴양 교육프로그램 인증 등) ①산림청장은 다양하고 내실 있는 산림문화 · 휴양 체험기회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산림문화 · 휴양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· 보급할 수 있다.<br>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· 보급하고자 하는 자 또는 교육과정을 개설 ·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.<br>1. 산림문화 · 휴양 교육프로그램<br>2. 숲해설가 교육과정<br>3. 등산안내인 교육과정<br>③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신청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이 교육시간 · 교육과목 · 교육시설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인증하여야 한다.<br>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에 대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.<br>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<br>⑥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.<br>⑦인증의 표시방법, 신청절차 및 인증기준 그 밖에 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. | 제정 2006. 8. 4 대통령령 제19641호<br><br>제3장 산림문화 · 휴양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인증 등 | 제정 2006. 8. 4 농림부령 제1536호<br><br>제2장 산림문화 · 휴양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인증 등<br><br>제2조(산림문화 · 휴양 교육프로그램 인증신청 · 절차 등) ①「산림문화 · 휴양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산림문화 · 휴양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· 보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프로그램 인증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br>②법 제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숲해설가 교육과정 또는 등산안내인 교육과정을 개설?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과정 인증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br>③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8조에 따른 인증심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심사를 거쳐 그 인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, 인증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그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. 위원회의 심사 결과 인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그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.<br>④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그 인증을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,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이를 보완 또는 개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<br>⑤제4항에 따른 보완 또는 개선의 요구를 받은 자는 14일 이내에 그 보완 또는 개선사항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br>⑥위원회는 그 인증을 신청한 자가 제4항에 따른 보완 또는 개선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제5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증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.<br>⑦제1항 내지 제6항에 따른 사항 외에 |

| 법 률 | 시행령 | 시행규칙 |
| --- | --- | --- |
| | | 인증 신청 및 인증서 발급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한다.<br>제3조(산림문화·휴양 교육프로그램 등의 인증기준)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인증기준은 별표 1과 같다.<br>제4조(산림문화·휴양 교육프로그램 등의 인증표시)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의 인증표시는 별표 2와 같다. |
| 제8조(인증심사위원회) ①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를 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하에 인증심사위원회를 둔다.<br>②인증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br>③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. | | 제5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림청 소속공무원 중에서 산림청장이 임명한다.<br>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.<br>1. 산림청 소속공무원 중 산림문화·휴양 업무와 관련이 있는 4급 또는 연구관이상의 자로서 산림청장이 임명한 자<br>2. 산림문화·휴양, 산림생태, 산림환경교육, 숲해설 또는 산악등반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산림청장이 위촉한 자<br>3. 산림문화·휴양을 목적으로 설립된 「민법」상의 비영리법인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산림청장이 위촉한 자<br>③위원회는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산림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이 과반수를 넘도록 구성한다. 이 경우 산림청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<br>④간사는 산림청장이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.<br>제6조(위원장의 직무 등)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그 업무를 총괄한다.<br>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<br>제7조(위원회의 회의 등)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<br>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br>③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 또는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.<br>제8조(위원회의 운영세칙) 제5조 내지 제7조의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·운 |

| 법 률 | 시행령 | 시행규칙 |
| --- | --- | --- |
| | | 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<br>제9조(위원회의 수당 등)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br>제10조(인증심사원의 활용) ①산림청장은 제2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인증심사원을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.<br>1.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자중 산림경영기술자의 자격이 있는 자<br>2. 산림분야의 공무원이었던 자로서 실무 경험이 10년 이상인 자<br>3. 산림문화·휴양, 산림환경교육 및 숲해설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추고 실무경험이 5년 이상인 자<br>②인증심사원의 선발 및 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한다. |
| 제9조(인증의 취소) 산림청장은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.<br>1.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<br>2.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| | |
| 제11조(등산안내인의 활용) ①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산 등 휴양의 목적으로 산림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등산안내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등산안내인으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.<br>②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산안내인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. | | 제12조(등산안내인의 활용 등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, 지방산림청장, 국립수목원장,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(이하 "등산안내인 활용기관의 장"이라 한다)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선발한 등산안내인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활동하게 할 수 있다.<br>1. 법 제13조에 따른 자연휴양림에 속하거나 또는 인근의 등산로<br>2. 법 제20조에 따른 산림욕장에 속하거나 또는 인근의 등산로<br>3. 「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수목원에 속하거나 또는 인근 |

| 법 률 | 시행령 | 시행규칙 |
| --- | --- | --- |
| | | 의 등산로<br>4. 그 밖에 등산안내인 활용기관의 장이 등산안내인의 활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지역<br>②등산안내인의 활동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br>1. 등산교육 및 안내에 관한 내용<br>2. 등산문화의 진흥에 관한 내용<br>3. 산림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내용<br>4. 법 제28조에 따른 산악구조대 활동 등 등산인의 안전에 관한 내용 |
| 제5장 등산로 등<br><br>제23조(등산로의 조성 등) ①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(이하 “등산로관리청”이라 한다)은 관할 산림(「자연공원법」에 의한 자연공원을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이용촉진과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등산로를 조성하고 이를 보전?관리하여야 한다.<br>②등산로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산로의 조성 · 보전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0년마다 관할 산림의 등산로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.<br>③등산로관리청은 등산로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10년마다 관할 등산로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, 이에 따라 등산로를 관리하여야 한다.<br>④등산로관리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업무를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·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<br>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산로 조사의 대상지역, 조사내용 ·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. | 제5장 등산로 등<br><br>제11조(등산로 실태조사의 위탁) 법 제23조제4항에서 “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· 단체”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· 단체를 말한다.<br>1. 「산림조합법」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<br>2.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산림사업법인<br>3. 「민법」에 따라 등산교육 · 훈련 등을 목적으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| 제4장 등산로 등<br><br>제20조 (등산로 실태조사의 대상지역등)<br>①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등산로 조사의 대상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.<br>1. 산의 정상 지점들을 연결하는 능선부의 주요 등산로<br>2. 역사적 · 문화적 · 생태적으로 보전 · 관리가 필요한 등산로<br>3. 자연휴양림, 산림욕장 및 수목원과 그 주변의 등산로<br>4. 도시주변 및 관광지 등의 등산로로서 일반국민이 많이 찾는 등산로<br>5. 그 밖에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등산로관리청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산로<br>②등산로의 조사방법은 문헌조사 및 현황조사 등으로 구분하며, 그 조사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br>1. 등산로의 노선, 위치, 거리 등 일반현황<br>2. 등산로에의 접근방법, 이용도, 위험도 및 등산의 난이도 등 등산정보<br>3. 등산로의 주변식생 및 훼손정도 등 관리상태<br>4. 등산로가 가지는 역사 · 문화적 가치 등 주요 특징 |
| 제24조(등산로의 조성 등에 대한 지원)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등산로의 조성 · 보전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산로에 대하여는 경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.<br>1. 산의 정상 지점들을 연결하는 능선부의 주요 등산로<br>2. 역사 · 문화유적지와 연계되는 등산로 등 역사적 · 문화적으로 보전 · 관리할 필요가 있는 등산로 | | |

| 법 률 | 시행령 | 시행규칙 |
| --- | --- | --- |
| 제25조(등산로의 휴식년제) ①등산로관리청은 등산로의 보호와 등산인의 안전 등을 위하여 등산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하여 일정 기간 동안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휴식년제를 실시할 수 있다.<br>②등산로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산로의 휴식년제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등산로의 위치?면적?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기간 그 밖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.<br>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등산로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등산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산림사업의 시행, 산불진화 그 밖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 없이 출입할 수 있다. | | 제21조 (등산로의 휴식년제) ①법 제25조 제2항에서 "그 밖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"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br>1. 등산로의 명칭<br>2. 휴식년제 실시의 목적<br>3. 대체 등산로의 이용안내<br>4. 위반에 따른 벌칙조항<br>5. 그 밖에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등산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br>②법 제25조제3항 단서에서 "그 밖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유"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br>1. 산불예방, 병해충구제 및 유해조수구제를 위한 출입<br>2.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수행을 위한 출입<br>3. 산림내 원주민의 일상생업에 필요한 출입<br>4. 「산불예방 및 진화에 관한 규칙」 제17조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림보호지도원의 산림보호활동을 위한 출입<br>5. 송 · 배전선로의 순시 및 유지?보수를 위한 출입<br>6. 그 밖에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등산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|
| 제26조(등산로 등의 협의매수) 등산로관리청은 등산로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산로 또는 그 주변지역의 토지와 입목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. 이 경우 매수가격은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. | | |
| 제27조(등산교육의 실시 등) ①산림청장은 건전한 등산문화의 정립 및 확산을 위하여 등산교육을 실시하는 등산학교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.<br>②산림청장은 등산학교 운영을 등산교육 · 훈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<br>③산림청장은 등산학교를 운영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 | | 제22조(등산교육의 위탁) 법 제27조제2항에서 "농림부령이 정하는 자"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.<br>1. 「공익법인의 설립 ·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산교육 · 훈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<br>2. 「민법」에 따라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등산교육 · 훈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|
| 제28조(산악구조대의 운영) ①등산로관리청은 등산인의 조난 · 실종 및 추락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산악구조대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 | 제12조(산악구조대의 운영 등) ①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산악구조대는 항공기를 이용하여 구조업무를 행하는 산림항공구조대(이하 "산림항공구조대"라 | |

| 법 률 | 시행령 | 시행규칙 |
| --- | --- | --- |
|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산악구조대의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| 한다)를 말하며, 산림항공관리본부에 편성하여 운영한다.<br>②산림항공구조대는 관할구역의 산림 안에서 등산인의 조난 · 실종 및 추락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환자를 응급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.<br>③제1항에 따른 산림항공구조대는 「소방기본법」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구조대 및 구급대와 업무수행에 협력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<br>④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산림항공구조대의 편성 ·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.<br>제13조(산림항공구조대원의 교육 및 훈련) 제12조제1항에 따라 편성된 산림항공구조대원은 연 1회 이상 그 임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. | |
| 제7장 벌 칙 | 제7장 벌 칙 | 제5장 벌 칙 |
| 제32조(과태료)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.<br>1. 제7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<br>2. 제1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자연휴양림에 출입한 자<br>3. 제2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등산로에 출입한 자<br>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, 시 · 도지사 또는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(이하 이 조에서 "부과권자"라 한다)이 부과 · 징수한다.<br>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<br>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,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「비송사건절차법」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.<br>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. | 제15조(과태료의 부과 · 징수) ①산림청장, 시 · 도지사 또는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(이하 이 조에서 "부과권자"라 한다)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· 확인한 후 위반사실 · 과태료의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<br>②부과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.<br>③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농림부령으로 정한다. | 제23조(과태료의 징수절차)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「국고금관리법」 또는 「지방재정법」을 준용한다. 이 경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. |

건강한 숲, 풍요로운 산, 행복한 국민

Healthy Forest

Rich Mountains

Happy People

www.foa.go.kr